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02호 2022. 10. 20.(목)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866호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사천시 조례 제1867호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사천시 조례 제1868호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사천시 조례 제1869호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 사천시 조례 제1870호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
- 사천시 조례 제1871호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9
- 사천시 조례 제1872호 사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0
- 사천시 조례 제1873호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 22
- 사천시 조례 제1874호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2-22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 27
- 사천시 고시 제2022-22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 28
- 사천시 고시 제2022-22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 29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2-1403호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0

- 사천시 공고 제2022-1408호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43
- 사천시 공고 제2022-1413호 사천 완사(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58
- 사천시 공고 제2022-1414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72
- 사천시 공고 제2022-1415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89
- 사천시 공고 제2022-1416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1건
입법예고 ----- 148
- 사천시 공고 제2022-1418호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10
- 사천시 공고 제2022-1419호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20
- 사천시 공고 제2022-1421호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입법예고 ----- 228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조례 제1866호

제26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0월 20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3조제5항제2호 중 “4대대장”을 “1대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천해양경찰서장

11. 육군 제8962부대 14해안감시기동대대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조례 제1867호

제26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0월 20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에 맞는 지역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제22조(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시민참여단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하는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30명 이내로 공개모집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시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생활 속 불편사항 점검 및 개선 의견 제시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의견수렴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 및 교육 참여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4조(임기) ① 시민참여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및 전문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참여단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시민참여단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조례 제1868호

제26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0월 20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민”을 “사천시민”으로, ““사천시 장난감은행””을 “사천시 장난감은행”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2. “장난감은행”이란 장난감 등의 물품을 무료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치) 사천시 장난감은행(이하 “장난감은행”이라 한다)은 사천시에 둔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은행”을 “장난감은행”으로, “갓는다”를 “수행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회원)”을 “(회원 및 연회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은행”을 “장난감은행”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의 직계존속, 법정보호자 또는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개인회원”이라 한다)
2. 사천시에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 및 원장(이하 “단체회원”이라 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원: 연 20,000원
2. 단체회원: 연 30,000원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④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5.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6.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탈퇴할 경우 연회비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다만, 회원가입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의 제목 “(연회비 납부 및 이용)”을 “(대여기간 및 수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은행을”을 “장난감은행을”로, “은행의”를 “장난감은행의”로 한다.

② 장난감 등의 대여기간은 대여일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대여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회원: 1회 2점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2. 단체회원: 1회 3점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을 “시장은 다음” 으로, “회원은 이용을 제한 할” 을 “회원에게는 장난감은행의 이용을 제한할”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한기간은 1개월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은행” 을 “장난감은행” 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8조제1호 중 “사람” 을 “경우”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盜用)한 경우
3. 대여물품을 3회 이상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했을 경우
4. 대여물품을 분실·훼손 및 파손하고,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5. 가입기간 중 3회 이상 연체 또는 연체일이 총 30일 이상인 경우
6. 대여물품을 직원의 동의없이 가져간 경우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 중 “장난감” 을 “대여물품” 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장난감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사천시 장난감은행 대여물품 변상기준” 을 “사천시 장난감은행 대여물품 변상기준”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조례 제1869호

제26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0월 20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 를 “(정의)”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를 “다음과” 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시의 본청” 을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의 본청” 으로, “읍·면
·동·사업소·시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다)” 를 “읍·면·동·사업
소·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사” 란 시장 및” 을 ““관사” 란” 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제3조(중전의 제2조) 중 “읍·면·동·사업소·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청사” 를 “읍·면·동·사업소·시의회 청사”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 을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7조 중 “의회청사” 를 “시의회 청사” 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사천시의회” 를 “시의회” 로 한다.

제1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3조 단서 중 “1급·2급” 을 “2급” 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를 “(이하 이 장에서” 로, “다음” 을 “다음 각 호의” 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가 있으면” 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예산” 을 “예산의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 을 “기본적인 비품” 으로,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를 “경비”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공공청사” 를 “청사” 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를 “사용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용자” 라 한다)” 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문화예술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를 “사용자” 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사용자와” 를 “시장과” 로 한다.

제34조제1호 중 “한다) 또는 정신질환자” 를 “한다)”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10.20.>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제6조 관련)

1. 시 청사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m²)

구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국·소장실	부서장실	팀장 (담당)	직원
본청	99	66	45	17.92	7.65	7.2
읍·면·동·사업소 및 직속기관	66	-	45	17.92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 이상 시, 면적 0.8m ² ×사용인원
	4~2.4 m ² /인	2.6~1.5 m ² /인	2~1.2 m ² /인	1.6~1 m ² /인	1.2~0.9 m ² /인	
상 황 실	2.64×(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장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m ² /인	0.40m ² /인	0.33m ² /인		
	엘리베 이터	(12.87~19.6m ²)×대수				
식 당	1.63m ² ×공무원수×0.3					
휴 게 실	2.0m ² ×공무원수×0.15					
민 원 실	{(6.55m ² ×민원담당공무원수)×1.1} + {(0.13m ² ~0.2m ² ×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 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m ² /인	11.52m ² /인	8.64m ² /인			
자 료 실	(0.3~0.4m ²)×공무원수					
창 고	0.72m ² /인 ~ 0.85m ² /인					
전 산 실	9.79m ² ×담당직원 수×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m ² 이상				평시 충무시 설로 이용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1m ² /인, 최소 6m ² 이상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m²)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 기계실	연면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m ²		800m ²		1,000m ²	
	층장비실	6.6m ²		8.4m ²		10.2m ²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이하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유면적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30~40%]

2. 시의회 청사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국·소장실, 부서장실 면적 준용	시 위원회 수 : 3개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m ² 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 3.3m ²	면적범위 내에서 적당한 규모로 분할
위원회실	의원 수 × 8.2m ²	위원회 수 : 3개
사무국장실	38.88 ~ 64.0m ²	
사 무 실	직원 수 × 7.2m ²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조례 제1870호

제26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0월 20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를 “다음과”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협약” 을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 으로, “보관·판매 및 환전” 을 “보관·판매·환전 등의”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 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품권의 발행·유통 시스템으로 판매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제1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한 날부터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판매대행점, 대행단체”를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할일판매 및 수수료)”를 “(할인판매 및 수수료)”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유통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조례 제1871호

제26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0월 20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정신질환이나 감염성”을 “감염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조례 제1872호

제26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0월 20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이하” 를 “(이하” 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 을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시장” 을 “시장이” 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을 “(곤충자원의 상품화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기술개발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 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으로 한다.

제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곤충자원의 상품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곤충산업 관련 기술” 을 각각 “기술” 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조례 제1873호

제26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0월 20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사천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농지법」에 따른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다음 각 호의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2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인 사천시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사천시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시장이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2022.10.20.>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권역(명칭)	관할구역	비 고
사천읍·축동면 농지위원회	사천읍	
	축동면	
정동면 농지위원회	정동면	
사남면 농지위원회	사남면	
용현면 농지위원회	용현면	
곤양면 농지위원회	곤양면	
곤명면 농지위원회	곤명면	
서포면 농지위원회	서포면	
사천시 농지위원회	선구동	1분과위원회
	동서금동	
	별용동	
	향촌동	
	동서동	2분과위원회
	남양동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조례 제1874호

제26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0월 20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자격은 사천시에 소재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기계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 허가한다. 다만, 동일 신청기간 내 농기계의 수량보다 사용자가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가한다.

1. 사천시에 농경지와 주소를 둔 농업인
2. 타 지역에서 출입하여 사천시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제8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허가 기간은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여 3일 이내로 하며, 입출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오전 10시 이전 입고와 오후 5시 이후 출고는 당일 일수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고시 제2022-222호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 10. 20.

사 천 시 장

연번	점용 사용 승인사항				실시계획 신고수리사항			신고자	
	승인번호 (승인일)	승인기간	위치	면적	신고번호 (신고일자)	공사기간	공사내역	주소	성명
1	2022-15 (2022.9.8.)	2022.9.8.~ 2023.12.31.	사천시 실안동 1248 번지선 일원	676.2	2022-11 (2022.9.27.)	2022-11 (2022.9.27.)	실안낙조 포토존 설치공사를 위한 가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관광진흥과)
2	2022-16 (2022.9.8.)	2022.9.8.~ 2036.12.31.	사천시 실안동 1248 번지선 일원	476	2022-12 (2022.9.27)	2022-12 (2022.9.27)	실안낙조 포토존 설치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관광진흥과)
3	2022-21 (2022.9.29.)	2022.9.29.~ 2036.12.31.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283-1번지선 일원	497	2022-13 (2022.9.30)	2022-13 (2022.9.30)	석방림 설치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
4	2022-12 (2022.8.2.)	2022.8.2.~ 2036.12.31.	사천시 용현면 금문리 212-3번지선 일원	243	2022-14 (2022.10.14)	2022-14 (2022.10.14)	사천해전 전망로 테크설치공사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관광진흥과)
5	2022-17 (2022.9.8.)	2022.9.8.~ 2023.12.31.	사천시 용현면 주문리 880-1번지선 일원	378.9	2022-15 (2022.10.14)	2022-15 (2022.10.14)	거북선길 경관정비 위한 가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관광진흥과)
6	2022-18 (2022.9.8.)	2022.9.8.~ 2036.12.31.	사천시 용현면 주문리 880-1번지선 일원	2,206.2	2022-16 (2022.10.14)	2022-16 (2022.10.14)	거북선길 경관정비 (석방림)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관광진흥과)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고시 제2022-22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 10. 20.

사 천 시 장

신 청 자		점용·사용 승인사항				실시계획 신고 수리사항		공사완료 신고수리
주 소	성 명	승인번호 (연월일)	승인기간	위 치	면적(㎡)	신고번호 (신고일자)	공사내역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지사 (어촌발전과)	2019-7 (2019.4.12.)	2019.4.12.~ 2049.4.11.	사천시 대포동 대포항 일원 공유수면	584.26 -직:556.71 -간:17.54	2019-13 (2019.10.22)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갯벌탐방로, 계류장)	2022.9.27.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재난안전과장)	2021-8 (2021.8.20.)	2021.8.20.~ 2050.12.31.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908-21번지선 일원	962	2021-6 (2021.9.2)	침수피해방지 피복석 및 반파공 설치	2022.9.27.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관광진흥과장)	2017-1 (2017.1.31.)	2015.12.18.~20 45.12.17.	사천시 대방동 681-2번지선	8,427	2016-2-1 (2017.7.24)	케이블카 설치	2022.10.13.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고시 제2022-224호

공유수면 점용 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및 변경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 10. 20.

사 천 시 장

연번	승인번호	승인 연월일	목적	위치	면적	승인 기간	피승인자	
							주소	성명
1	2022-20	2022.9.29.	파도막이 및 부잔교 1식	서포면 비토리 17-37번지선	전체:1029 직접:595 간접:434	2022.9.28. ~2036.12.31.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도시재생과)
2	2022-21	2022.9.29.	석방림 설치	서포면 다평리 1283-1번지 일원	497	2022.9.29. ~2036.12.31.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해양수산과)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공고 제2022-1403호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년 초 도시가스 공급 사업 시행 공고를 통한 수요조사 등 행정절차가 이루어짐에 따라 본 공사의 하반기 착공으로 인한 이월이 발생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의 신속성이 저하되어 이를 예방하고, 상위 법령 근거 오기 조항 수정,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 상향으로 도시가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2. 주요내용

- 가. (도시가스) “본관” 상위법 근거 규정에 맞게 조례 개정(안 제2조제2호)
 -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나. ‘매년 초’ 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공고를 ‘사업 시행 전으로 하되, 시장이 별도로 정함’ 으로 개정(안 제6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065, FAX: 831-6031)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지역경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매년 초 도시가스 공급 사업 시행 공고를 통한 수요조사 등 행정절차가 이루어짐에 따라 본 공사의 하반기 착공으로 인한 이월이 발생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의 신속성이 저하되어 이를 예방하고, 상위 법령 근거 오기 조항 수정,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 상향으로 도시가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

3.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 “본관” 상위법 근거 규정에 맞게 조례 개정 (안 제2조 제2호)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나. ‘매년 초’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공고를 ‘사업 시행 전으로 하되, 시장이 별도로 정함’으로 개정(안 제6조)
- 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전액 지원 (안 제8조)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도시가스사업법」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2) 입법예고
 - 가) 기 간: 2022. 10. . ~ 2022. 10. .(20일 이상)
 - 나) 제출의견: 없음, 건
 -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2호에 의한”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조제3에 의한”을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년 초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을 “도시가스 공급사업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시기는 사업 시행 전으로 하되, 시장이 별도로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경상남도 고시「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시장은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지원한다”를 “보조금을 지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공급관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 이행이 가능한 지역

제8조제1항 중 “지원하되,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가구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자가 주택 소유자에 한정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보조금 신청서”로,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신청 연명부”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보조금 신청 연명부”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역주민(대표자)은 보조금 신청 이전에 도시가스 공급 공사 가능성 여부를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제10조의 제목 “(보조금 지급)” 을 “(보조금 교부)”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급신청서” 를 “신청서” 로 한다.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공급관 설치비” 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공급관 설치비” 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사천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 을 “사천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 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지급” 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정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p> <p>2. “본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배관”을 말한다.</p> <p>3. (생략)</p> <p>4. “공급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에 의한 “배관”을 말한다.</p> <p>5. ~ 9. (생략)</p> <p>제5조(협약체결)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제6조(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 시장은 매년 초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지원계획을 수</p>	<p>제2조(정의) ----- -----.</p> <p>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p> <p>2.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p> <p>3. (현행과 같음)</p> <p>4. ----- ----- 제2조제3호에 따른 -----.</p> <p>5. ~ 9. (현행과 같음)</p> <p>제5조(협약체결) <u>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 -----.</p> <p>제6조(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 ① -- <u>도시가스 공급사업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u> ----- ----- -----</p>

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
해야 한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규모 및 지원 절차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신 설>

제7조(지원대상 등) ① 보조금 지원대
상은 경상남도 고시 「도시가스 시
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
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단
독주택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만 지원한
다.

1. · 2. (생 략)

<신 설>

- ② ~ ④ (생 략)

제8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의 공급관 시설비 중
신청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세대당 최대 66만원을 부담하고, 초
과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되,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

-----.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시기는 사업
시행 전으로 하되,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경제성
미달지역-----

----- 보
조금을 지원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공급관 등 도시가스 공
급시설 공사 이행이 가능한 지역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

----- 시장은 예산의 범
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원

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가구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제9조(지원대상 선정과 절차)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신청 연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보조대상 선정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④ (생략)

제10조(보조금 지급) ①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도시가스공사 준공완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도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자가 주택 소유자에 한정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 선정과 절차) ① ---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보조금 신청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보조금 신청 연명부-----

----- 이 경우 지역주민(대표자)은 보조금 신청 이전에 도시가스 공급 공사 가능성 여부를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보조금 교부) ① -----

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 략)

제11조(사업의 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
에게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
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보
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조
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
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
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법령과 조례의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신청서-----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관 련 법 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가스공급계획에 공급의무가 반영된 경우 외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3.>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고속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공고 제2022-1408호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1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직제개편에 따라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1건을 일부 개정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1) 기금의 용자사항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0조)
-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3) 법령 규정 중복사항 삭제

나.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용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변경(문화관광국장 → 보건소장)
-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3) 법령 규정 중복사항 삭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보건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보건위생과장)

(우편번호 : 52539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617, FAX : 831- 6041)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보건위생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식품진흥기금의 용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많은 시민에 대한 혜택을 주고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용자사항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0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다. 법령 규정 중복사항 삭제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0. . ~ 2022. 1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 “영업자” 라 함은” 을 “ “영업자” 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 을 “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 시장” 을 “란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식품진흥기금” 을 “기금” 으로 한다.

제10조 중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 을 “시장은 기금의 예치금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법 제89조제3항” 으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영업자</u>”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2. “<u>시설개선자금</u>”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p> <p>3. “<u>대여</u>”라 함은 시장이 사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뜻은 -----.</p> <p>1. “<u>영업자</u>”란 ----- ----- -----.</p> <p>2. -----<u>이란</u> ----- ----- -----.</p> <p>3. -----<u>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p>
<p>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u>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p> <p>1. <u>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u></p> <p>2. <u>해당연도 기금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u></p> <p>3. <u>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p> <p>③ (생략)</p>	<p>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삭제></p> <p><삭제></p> <p>③ (현행과 같음)</p>

제9조(사업의 집행) ① (생략)

② 시장은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0조(기금의 용자)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기기 설치 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용자한다.

제18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 규정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9조(사업의 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금 -----

-----.

제10조(기금의 용자) 시장은 기금의 예치금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법 제89조제3항-----

--.

<삭제>

<삭제>

관 련 법 규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

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용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2022 - 제 호
번 호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보건위생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용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하여 식품진흥기금 용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용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변경(안 제9조제3항)
 - 문화관광국장 → 보건소장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다. 법령 규정 중복 사항 삭제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0. . ~ 2022. 1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제1항에 따른 “규칙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을 “제12조제1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읍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제9조에 따른 읍자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용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 례 <u>제12조제1항에 따른 “규칙이 정하는 서류”</u>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말한다.</p> <p>1. ~ 3. (생 략)</p> <p>② 용자신청서를 접수한 사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접수 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용자대상 적 격 여부를 확인한 후, <u>용자심의위 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u>를 거쳐 용자대상자를 확정하 다.</p> <p>제7조(용자대상 선정기준) ① (생 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u>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는 용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 5. (생 략)</p> <p>제9조(용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p> <p>①·② (생 략)</p> <p>③ 위원장은 <u>문화관광국장</u>으로 한 다.</p> <p>④ ~ ⑥ (생 략)</p>	<p>제6조(용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 <u>제12조제1항에서 “규칙에서 정 하는 서류”</u>란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 ----- 제 9조에 따른 <u>용자심의위원회</u>----- ----- -.</p> <p>제7조(용자대상 선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도</u> ----- 각 <u>호의 어느 하나</u>----- -----.</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9조(용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보건소장</u>-----.</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제11조(수당) 용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
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공고 제2022-1413호

사천 완사(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사천시 곤명면 일원에 완사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20.

사 천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지사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나. 사업의 명칭 등

사업의 명칭	하천명 (등급)	사업예정지	목 적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천 완사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완사천 (지방하천)	사천시 곤명면 일원	하천재해예 방	하천정비 4.98km	2023년 ~2026년

2. 관계서류 열람기간 : 2022.10.20. ~ 2022.11.03.(공고일부터 15일간)

3. 관계서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방법

가. 열람장소 : 사천시 건설과

나.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 장소로 서면으로 의견 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천시 건설과 하천담당 (☎ 055-831-3270)

4. 토지 세목조서 및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참조

용지조서(사천 완사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성명	우편번호	주소	권리자명	우편번호	권리자주소		권리구분
	합계	152	필지		65,825								
2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14-1	답	2,118	1,307	김*남	52666	경상남도 진주시 서장대로 279-1(이현동)	한*****사	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사천지사)	근저당권	
3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14-2	답	2,403	10	이*용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95-3					
4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15-1	답	3,904	2,691	이*용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95-3					
6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15-2	답	1,583	37	이*용	52629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956-2					
7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15-3	답	1,152	3	이*용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95-3					
9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150	학	4,576	7	조*민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당종태실길 152-3	곤*****합	52503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봉명로 507(완사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10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153-2	대	172	3	조*민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당종태실길 152-3	곤*****합	52503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봉명로 507(완사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11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16-1	답	2,241	1,025	이*희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길 96	한*****사	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사천지사)	근저당권	
12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17-4	답	2,349	357	이*달	66492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73-1					
13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19-4	답	1,335	69	이*달	66492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73-1					
14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19-5	답	3,019	2,604	김*춘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61					
15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0-6	답	925	17	이*호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168					
						이*용	66492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411-2					
						강*덕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244					

용지조서(사천 완사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성명	우편번호	주소	권리자명	우편번호	권리자주소		권리구분
17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33-5	답	4,510	2,691	배*선	66492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96-2					
18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33-4	답	3,269	38	김*춘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61					
20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34-4	답	898	898	이*구	51467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881번길 8 204동401호(대방동,대동디지털황토아파트)					
22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168	대	448	166	강*덕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길 26-2					
23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149-4	답	165	165	강*덕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길 26-2					
24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168-2	대	104	91	강*덕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길 26-2					
25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169-1	창	448	97	이*달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정골길 44-3					
26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169-3	도	30	4	이*만	66492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301					
27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169-4	대	175	22	이*구	51467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881번길 8 204동401호(대방동,대동디지털황토아파트)					
31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166-2	도	73	32	이*용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74					
33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169-2	도	33	33	이*만	66492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301					
34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115	답	1,331	115	박*근	52738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823-2 현대아파트201-1303					
35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16-2	답	1,726	1,126	이*달	66492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73-1					
38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17-5	답	1,957	1,957	조*완	52728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407-1 금호석류마을101-1704					
41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0-7	답	1,752	1,083	이*용	52679	경상남도 진주시 인사동 179-4					

용지조서(사천 완사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성명	우편번호	주소	권리자명	우편번호	권리자주소		권리구분
						이*호	66492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400					
42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0-8	답	1,145	1,145	이*만	52719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646-1					
						이*진	52803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197-93					
						이*민	52697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707-1 신안2차주공아파트 204-1101					
44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78-9	답	6	6	이*구	51467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881번길 8 204동401호(대방동,대동디지털황토아파트)					
46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34-3	답	1,132	73	이*구	51467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881번길 8 204동401호(대방동,대동디지털황토아파트)					
48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78-4	도	33	33	이*길	3764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538 신동아베르디2차107-1307					
50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78-3	도	33	33	이*길	3764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538 신동아베르디2차107-1307					
53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34-1	답	2,006	8	이*열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74					
57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35-1	답	1,496	86	이*근	51424	경상남도 창원시 반림동8 럭키반림아파트 7-1303					
58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35-2	답	1,848	501	이*근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74					
59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36-2	답	2,390	1,032	배*선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길 96	한*****사	58327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사천지사)	근저당권	
									곤*****합	52503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봉명로 507(완사지점)	근저당권	
61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37-2	답	3,054	103	이*석	46227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실로24번길 3(남산동)					
62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37-3	답	816	274	이*석	46227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132-18					

용지조서(사천 완사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성명	우편번호	주소	권리자명	우편번호	권리자주소		권리구분
63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37-4	답	1,727	592	조*봉	47870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121번길 48-15,302호(온천동,현대빌라)					
64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37-5	답	1,371	944	조*봉	47870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121번길 48-15,302호(온천동,현대빌라)					
66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38-6	답	1,092	294	이*태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413	곤*****합	52503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봉계리 866(완사지소)	근저당권	
						이*조	66492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96					
						이*현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길 71					
67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38-7	답	1,226	1,226	이*용	52693	경상남도 진주시 천수로298번길 10 104호(신안동,대화리네르빌)	서*****고	52661	경상남도 진주시 창렬로 126(상봉동)	근저당권 지상권	
69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39-6	답	3,594	1,679	재***** 회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86					
71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40-4	답	2,552	773	재***** 회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86					
72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40-5	답	1,481	1,481	이*용	66492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75					
						이*호	66492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400					
						이*극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95-8					
						이*용	52679	경상남도 진주시 인사동 179-4					
						이*용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95-4					
73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40-3	답	2,970	81	이*태	66492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96-2					
74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41-2	답	3,063	80	이*찬	66492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71					

용지조서(사천 완사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성명	우편번호	주소	권리자명	우편번호	권리자주소		권리구분
75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41-4	답	1,806	323	이*규	1643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11-11 성원상떼빌아파트8-301					
76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41-5	답	838	838	이*길	36446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팔각산로 2133					
						이*근	5165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21번길 17 102동1006호(이동,진해이동미소지움아파트)					
77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41-6	답	1,284	1,284	이*석	46227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실로24번길 3(남산동)					
79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78-1	답	3,394	1,038	이*구	51467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881번길 8 204동401호(대방동,대동디지털황토아파트)					
80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78-5	도	10	4	이*길	3764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538 신동아베르디2차107-1307					
81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71-3	도	96	96	이*석	46227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실로24번길 3(남산동)					
82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71-2	도	76	25	이*석	46227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132-18					
83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120	잡	279	182	이*석	46227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132-18					
87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121-3	답	2,099	26	이*석	46227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132-18					
89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66-2	도	13	13	이*길	3764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538 신동아베르디2차107-1307					
92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121-2	답	1,118	133	이*중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세종태실로 79	한*****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사천지사)	근저당권	
93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121-1	답	2,397	2,086	이*용	5231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094-66					
97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32	답	794	35	이*길	36446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팔각산로 2133					
						이*근	5165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21번길 17 102동1006호(이동,진해이동미소지움아파트)					

용지조서(사천 완사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성명	우편번호	주소	권리자명	우편번호	권리자주소		권리구분
99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18-2	답	3,588	90	이*용	52629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74 106동601호(금산느티나무아파트)	농*****사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진주시지부)	근저당권	
101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41-3	답	1,217	46	이*찬	66492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271					
102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42-5	답	3,169	951	이*석	66492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89					
104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43-5	답	3,235	980	정*종	1666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5번길 73 306동303호(권선동,수원아이파크시티아파트)					
105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산148	임	7,736	122	이*용	4266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84-22					
1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389-2	답	4,021	1,179	이*극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길 73					
4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391-4	답	1,210	246	강*국	66492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248					
						강*근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242					
						강*신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241					
5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391-5	답	1,407	1,407	황*순	52724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942번길 16 101동304호(칠암동,칠암대덕아파트)					
						강*소	66492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368					
						강*국	66492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248					
						강*영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237					
						강*경	5110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로267번길 9 101동802호(창원의봄)					
						강*정	4228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로 90 207동1505호(신매동,시지2차대백맨션)					

용지조서(사천 완사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성명	우편번호	주소	권리자명	우편번호	권리자주소		권리구분
						강*혜	52724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942번길 16 101동304호(칠암동, 칠암대덕아파트)					
7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394-3	답	949	762	강*근	66492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213					
8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394-2	답	2,010	570	박*섭	66492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397					
9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394-1	답	1,997	604	강*지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416					
						강*렬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409					
						강*근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242					
10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400-2	천	27	13	박*석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12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115	답	2,994	632	이*	66492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243					
17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117	답	3,029	635	강*근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239					
18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131	답	1,625	198	강*근	52741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290-32					
20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133	답	2,276	47	강*근	52741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290-32					
22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산98	임	43,638	39	박*섭	660811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779					
23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산98-2	임	7,986	353	정*영	52771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336-13					
25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395-3	답	362	60	양*자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214					
27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산98-1	임	63,263	1,397	강*호	0798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1 목동신시가지아파트608동1205호					

용지조서(사천 완사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성명	우편번호	주소	권리자명	우편번호	권리자주소		권리구분
28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401-2	전	465	273	강*근	66492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213					
29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산96-2	임	29,950	90	김*녀	50954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101번길 19 302동1506호(외동,김해내외대동한마을타운)	사*****합	52521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진삼로 1396	근저당권	
30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403	전	314	243	강*동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249					
31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산96-3	임	923	193	엄*인	52701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92-1 들말한보타운105-1107					
33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404-2	전	391	391	강*근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263					
35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405	전	721	33	엄*인	52701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92-1 들말한보아파트105-1107					
37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405-1	전	3,327	530	강*근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242					
40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273	답	1,490	38	강*석	1348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75 113동1302호(삼평동,붓들마을)					
41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279	답	2,390	129	강*석	1348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75 113동1302호(삼평동,붓들마을)					
42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280	답	2,647	144	강*근	52741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290-32					
43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282	답	2,796	166	강*금	50441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15-26 유성청구타운101-911					
44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283	답	2,377	263	강*홍	52606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길 20					
48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411-1	답	3,251	346	황*순	52724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942번길 16 101동304호(칠암동,칠암대덕아파트)					
						강*권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228					
						강*경	5110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로267번길 9 101동802호(창원외름)					

용지조서(사천 완사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성명	우편번호	주소	권리자명	우편번호	권리자주소		권리구분
						강*정	4228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로 90 207동1505호(신매동,시지2차대백맨션)					
						강*해	52724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942번길 16 101동304호(칠암동,칠암대덕아파트)					
51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411-2	답	2,000	23	강*국	66492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248					
						강*해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247					
						강*영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237					
						강*영	0660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5-509					
53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405-2	전	1,058	68	강*근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242					
54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산96-1	임	63,900	454	강*근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242					
55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412-3	답	149	119	정*리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안길 46					
4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55	답	3,826	31	강*채	47588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30-1 연산동대우아파트101-2403					
5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58	답	800	80	강*표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124					
6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59	답	4,991	730	강*표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124					
8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60	답	3,477	708	윤*상	664925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261-1					
9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63-1	답	2,118	351	윤*상	664925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261-1					
17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63-13	답	901	136	강*자	44754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789-6 야음동부아파트302-503					

용지조서(사천 완사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성명	우편번호	주소	권리자명	우편번호	권리자주소		권리구분
						강*자	44754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789-6 야음동부아파트305-302					
18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산99-2	임	5,285	57	박*실	51123	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 우암리 345					
24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87	학	8,609	104	학*****원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송림길 34					
25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63-15	답	1,431	211	강*표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124					
27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63-6	답	4,672	448	황*연	52645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곤수로 889	수*****합	52645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옥수로 645(원당지점)	근저당권	
28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63-7	답	892	90	황*연	52645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곤수로 889	수*****합	52645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옥수로 645(원당지점)	근저당권	
29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63-8	답	3,333	781	강*범	0606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42 청담아파트4동506호					
31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64	학	3,087	247	학*****원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송림길 34					
32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65	답	2,099	623	강*중	52805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221-26					
35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100	답	3,146	1,000	강*자	664925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233					
38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101-4	답	4,670	1,068	이*임	664925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419					
40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103-3	답	5,164	257	강*규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114-1					
50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151	구	66	66	강*섭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51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150-1	전	135	135	한*환	52517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1동405호(전원멘션)					
52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154-1	답	2,422	654	김*이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송림길 148-7					

용지조서(사천 완사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성명	우편번호	주소	권리자명	우편번호	권리자주소		권리구분
53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153	답	354	354	김*이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송림길 148-7					
59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164-1	도	13	13	강*수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62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164-2	전	1,816	151	강*복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고성산동화로 15					
65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163	전	1,745	219	강*복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고성산동화로 15					
66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160	전	4,480	2,092	강*복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고성산동화로 15					
68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159	답	1,978	1,350	강*복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고성산동화로 15					
69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157	답	1,517	1,517	강*복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고성산동화로 15					
70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158	전	2,334	509	강*복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고성산동화로 15					
72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44	답	1,054	271	양*옥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송림길 148-17					
73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45	답	97	97	이*임	664925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419					
75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38-4	답	1,392	5	강*준	5137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반계로 101, 105동 601호(팔용동, 대동중앙아파트)					
78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38-1	답	397	19	정*자	52523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520 송보파인빌입대아파트104-401					
84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39	전	497	12	강*규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114-1					
6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780	답	923	37	이*우	52721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237(칠암동)					
7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783	전	169	101	강*주	4756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397-34					

용지조서(사천 완사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성명	우편번호	주소	권리자명	우편번호	권리자주소		권리구분
8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781	답	857	243	이*우	52721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237(칠암동)					
10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779-3	답	2,630	280	김*근	52501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구물안길 30	대*****합	52607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324-3	근저당권	
14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765-1	답	528	412	이*주	52951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척변정리 473-1 인성씨티빌106호					
						최*숙	52951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척변정리 473-1 인성씨티빌106호					
27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769-1	답	349	113	김*기	42707	대구광역시 달서구 파산동 350 성서삼성한국형아파트103-602					
35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783-3	전	70	70	강*주	4756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397-5					
36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784	전	426	231	유*수	52500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송림리 124					
44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산196-1	임	28,737	106	강*근	04609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06					
48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397-2	답	1,295	103	김*연	480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77 주공아파트105-316					
53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398-2	답	2,943	64	김*숙	47541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065번길 25 301호(연산동,엘리트빌2차)					
66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391-3	답	2,672	386	김*성	54143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53-12 나운1차서호아파트103-104					
69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392-4	답	498	28	박*제	49102	부산광역시 영도구 옷서발로 62-9, 202호 (동삼동,광빈빌라)	곤*****합	52503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봉명로 507(완사지점)	근저당권	
70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392-3	답	2,978	7	박*제	49102	부산광역시 영도구 옷서발로 62-9, 202호 (동삼동,광빈빌라)	곤*****합	52503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봉명로 507(완사지점)	근저당권	
74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392-5	답	1,225	492	이*경	52712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253 한보아파트102동1708호					
76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393-4	답	2,592	130	조*호	133854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304-2					

용지조서(사천 완사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성명	우편번호	주소	권리자명	우편번호	권리자주소		권리구분
						조*식	52253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양전리 229-4					
85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394-4	답	572	240	한*선	52710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로290번길 1-18(망경동)					
87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394-3	답	3,060	11	문*철	52710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49-27	곤*****합	52503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봉계리 866(완사지소)	근저당권	
92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400-1	답	1,803	393	김*진	52502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523-1					
97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401-1	답	1,162	274	문*철	52710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49-27					
101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402-1	답	2,216	681	서*규	52787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107번길 10-3(상대동)	곤*****합	52503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봉계리 866(완사지소)	근저당권	
103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402-2	답	2,644	32	최*호	52770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334번길 5-4(하대동)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공고 제2022-1414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략산업(항공/우주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신설 및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 확대·개편을 통해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일한 기준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략산업(항공/우주산업) 특별지원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나.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 확대·개편(안 제20조 ~ 21조)

1)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2) 위원회 기능: 전략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 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내용 반영
 - 신설·증설 기업지원 신설(안 제5조의2)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055, FAX: 831-6044)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우주항공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략산업(항공/우주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신설 및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 확대·개편을 통해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일한 기준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략산업(항공/우주산업) 특별지원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나.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 확대·개편(안 제20조 ~ 21조)

1)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2) 위원회 기능: 전략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내용 반영

- 신설·증설 기업지원 신설(안 제5조의2)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0. . ~ 2022. 1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제10호, 같은 법 제18조의2” 를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18조의3”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8조의2에 따라” 를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육성을 위해” 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2조제1항제5호” 를 “법 제2조제1항제6호” 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8항” 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전략산업” 이란” 을 ““경상남도 전략산업” 이란” 으로, “따른다” 를 “따른 전략산업을 말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 을 “이란”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따른 사업자등록일” 을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투자기업”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관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11. “사천시 전략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수도권기업의 관내 전입 등에 대한 지원)”을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입기업”을 “이전기업”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타시도 기업의 관내 전입 지원)”을 “(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타 시도”를 “도외”로, “전입하는”을 “이전하는”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신설·증설 기업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2”를 “「도로명주소법」 제10조”로, “명예 도로명”을 “명예도로명”으로 한다.

제7조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예산”으로 한다.

제8조 중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범위에서”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대해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를 “대해” 로 한다.

제10조 중 “전략산업” 을 “경상남도 전략산업” 으로, “경우” 를 “경우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 ① 시장은 항공우주 관련기업이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아 투자하는 경우 기업투자촉진지구 등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중 “이 조례 제3조” 를 “제3조” 로 한다.

제18조 후단 중 “시가” 를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가” 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임대산업단지” 를 “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지”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도지사가” 를 “시장이” 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투자유치활동” 을 “시장은 투자유치활동” 으로, “위원회” 를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항 중 “10명” 을 “20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사천시의회 의원,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법조계·학계·금융계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1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천시 전략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제27조제1항 단서 중 “부지매입금을” 을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장 부지매입비 용자를” 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의2에 따른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투자기업”이란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 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p> <p>2. (생 략)</p> <p>3. “국가혁신융복합단지”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p> <p>4.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경상남</p>	<p>제2조(정의) ----- -----.</p> <p>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p> <p>가. 신설기업: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p> <p>나. 증설기업: 관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p> <p>2. (현행과 같음)</p> <p>3. ----- -----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18조의3----- ----- -----.</p> <p>4. ----- ----- 제18조의3 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육성을</p>

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수립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포함된 육성대상 산업을 말한다.

5. (생략)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

7.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다.

8. (생략)

9. “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

10.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신설>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위해 -----

-----.

5. (현행과 같음)

6. ----- 법 제2조제1항제6호-----.

7.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

8. (현행과 같음)

9. “경상남도 전략산업”이란 -----

따른 전략산업을 말한다.

10. -----이란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11. “사천시 전략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을 말한다.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

은 도외 소재 사업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기업투자 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③ (생략)

제4조(수도권기업의 관내 전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전입기업, 관내 신·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 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타시도 기업의 관내 전입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이 타 시도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 도
지사-----

-----.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

----- 이전기업-----

-----.

제5조(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① ----- 도외-----

----- 이전하는 -----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 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2에 따라 기업명을 사용하여 명예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특별지원금 추가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중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투자촉진기반시설 설치) 시장은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 관내 투자기업을 위한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의2(신설·증설 기업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도로명주소법」 제10조-----
----- 명예도로명-----
-----.

제7조(특별지원금 추가지원) -----

----- 예산-----

-----.

제8조(투자촉진기반시설 설치) -----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
-----.

제9조(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조(임대용지 공급) 시장은 전략 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신설>

제13조(지원제한) 시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이 조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제9조(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

----- 대해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임대용지 공급) ----- 경상남도 전략산업 -----
----- 경우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

제10조의2(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 ① 시장은 항공우주 관련기업이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내 산업 시설용지를 분양받아 투자하는 경우 기업투자촉진지구 등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제한) -----

----- 제3조 -----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법조계·학계·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性)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 4. (생략)

<신설>

5.·6. (생략)

제27조(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 등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 20명 -----.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사천시의회 의원,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법조계·학계·금융계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위원회의 기능) -----.

1. ~ 4. (현행과 같음)

5. 사천시 전략산업 투자기업 특별 지원에 관한 사항

6.·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27조(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

-----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장 부지 매입비 용자를 -----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 부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시장은 도지사에게 사업부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8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제30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이중지원 금지) ① -----

----- . 다만, 제10조의2에 따른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공고 제2022-1415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략산업(항공/우주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신설에 따라 지원내용 및 기준 등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고시)」 및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동일한 기준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략산업(항공/우주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8조의4)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 1) 지원내용: 부지매입금액의 15% 이내(최대 10억원)
 - 2) 지원대상: 경남항공국가산단 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아 투자하는 항공우주 관련 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관외 사업장의 관내 이전,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3) 지원조건: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 (신규고용인원) 10명 이상
-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 및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내용 반영
- 1)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평가기준 마련(안 제11조)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타당성 평가에 따름
 - 2) 도내 이전기업 지원 업력 기준 완화(안 제18조)
 - 국내 연속 1년 이상 사업 영위 완화
 - 3) 신설·증설 기업지원에 대한 기준 명확화(안 제18조의2)
 - 도내 기업인 경우, 도내의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 등
 - 4) 기업 타당성 평가 기준 변경(안 제19조)
 - 기업 타당성 평가 시 ‘이자보상배율’ 항목을 ‘총자산증가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로 변경
 - 5) 보조금 및 융자금의 신청 조항 신설(안 제22조)
 - 신청기한 구체화, 투자기업의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제한 신설 등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055, FAX: 831-6044)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우주항공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략산업(항공/우주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신설에 따라 지원내용 및 기준 등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고시)」 및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동일한 기준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략산업(항공/우주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8조의4)

1) 지원내용: 부지매입금액의 15% 이내(최대 10억원)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2) 지원대상: 경남항공국가산단 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아 투자하는 항공우주 관련 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관외 사업장의 관내 이전,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3) 지원조건: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 (신규고용인원) 10명 이상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산업부고시)」 및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내용 반영

1)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평가기준 마련(안 제11조)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타당성 평가에 따름

2) 도내 이전기업 지원 업력 기준 완화(안 제18조)

- 국내 연속 1년 이상 사업 영위 완화

3) 신설·증설 기업지원에 대한 기준 명확화(안 제18조의2)

- 도내 기업인 경우, 도내의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 등

4) 기업 타당성 평가 기준 변경(안 제19조)

- 기업 타당성 평가 시 ‘이자보상배율’ 항목을 ‘총자산증가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로 변경

5) 보조금 및 융자금의 신청 조항 신설(안 제22조)

- 신청기한 구체화, 투자기업의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제한 신설 등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0. . ~ 2022. 1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업에”를 “제24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로, “통보한”을 “신청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17.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업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후에”를 “후 5년 이내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제9조제1항 전단 중 “이전하는 설비가액” 을 “설비가액”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제2항” 을 “별표 2의2” 로, “같은 지원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요건에 해당할” 을 “60점 이상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내로” 를 “범위에서 별표 2의3과 같이”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도지사” 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사천시” 를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를 “제3항제1호 및 제3항제2호” 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와” 를 “시와” 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제2항” 을 “별표 2의2” 로, “같은 지원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요건에 해당할” 을 “60점 이상일” 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서의 투자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년” 을 “1년” 으로 한다.

1.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다만,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업이 포함된 기업이라도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신설·증설 기업지원) ①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신설·증설 기업 지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도내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다만,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업이 포함된 기업이라도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4.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5. 별표 3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50점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5. 별표 3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50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인 경우 36점) 이상일 것. 다만, 국내에서 연속한 사업영위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3의3과 같이 하며, 기업당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4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3(임대료 지원) ① 조례 제10조 및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임대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업 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것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5.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내일 것

② 임대료의 지원은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0범위에서 연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0년까지로 한다.

③ 임대료 지원기간 중 투자계획 완료기한까지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제24조에 따른 정산 이후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며, 투자계획 완료 이후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미달기간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의4(사천시 전략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시와 부지 매매계약일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2.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관외 사업장의 관내 이전,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것(기업이 관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 인원을 포함한다)

3. 별표 3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인 경우 36점)일 것

4.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5. 기업이 관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부지매입금액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며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계약일부터 1년(단,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4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 인원이 모두 제1항제2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제1항제3호의 타당성 평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⑥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제4항 중 “50점 이상이고 대상기업 적격평가(사업실적” 을 “50점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42.5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평균매출액” 으로, “이자보상배율을” 을 “총자산 증가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를” 로, “35점” 을 “35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27.5점)” 으로 한다. 제22조를 제22조의2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보조금 등의 신청) ①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1개월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단,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은 제외)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일은 시장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공문이 도지사에게 접수된 날을 말한다.

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환수 또는 반납처분을 받은 경우 및 이 규칙의 금지·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전액환수 또는 전액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부부터 5년 경과 후 신청 가능)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선행투자 정산 결과 투자금액 달성률이 70 퍼센트 미만인 경우, 사후관리기간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이 70퍼센트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미만인 경우, 투자 또는 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환수를 제외한 이 규칙의 금지·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일부환수 또는 일부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부터 3년경과 후 신청 가능)

3.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또는 사업이행을 포기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을 반납한 경우(포기신청일부터 1년 6개월경과 후 신청 가능)

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인 경우(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미만 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③ 제11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 기업 중 도내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 4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의2(중전의 제22조)의 제목 “(보조금 등의 지원)” 을 “(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 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은 제외한다.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은 제외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 략)</p> <p>7. <u>“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업종을 말한다.</u></p> <p>8. ~ 10. (생 략)</p> <p>11. <u>“광역협력권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의 산업을 말한다.</u></p> <p>12. <u>“주력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한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u></p> <p>13. <u>“지역집중유치업종”이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u></p> <p>14. (생 략)</p> <p>15. <u>“사후관리기간”이란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장(이하</u></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8. ~ 10.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14. (현행과 같음)</p> <p>15. ----- 제24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p>

“시장”이라 한다)이 기업에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 4. (생략)

제5조(입지보조금) ① (생략)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 신청한 -----
-----.

16.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17.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업을 말한다.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입지보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후 5년 이내 -----
-----.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생략)

제9조(이전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이전하는 설비가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

② (생략)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생략)
2.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같은 지원기준 제17조제3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이전보조금) ① -----

----- 설비가액-----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

1. (현행과 같음)
2. 별표 2의2-----
----- 6
0점 이상일 ---

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요건에
해당할 것

3. · 4. (생략)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
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며 100
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⑤ (생략)

⑥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의 신청이 있을 경우 도지사와 협
의하여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생략)

② 조례 제9조에 따른 국가혁신융
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에 대
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사천시와 최초 착공신고일 이전
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2. · 3. (생략)

② (생략)

③ 시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항제2
호에서 정한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
고용인원에 추가하여 신규로 상시

3. · 4.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에서 별표 2의3과 같
이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제12조(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현행과 같
음)

② -----

-----.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제3항제1호 및 제3항제2호

고용한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지원 비율을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제16조(기금의 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 대상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시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경상남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중 연구소의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같은지원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요건에 해당할 것

3. · 4.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설>

-----.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16조(기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와 -----

-----.

제17조(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①

-----.

1. (현행과 같음)

2. 별표 2의2-----
----- 60
점 이상일 ----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제18조(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 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 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2. 국내에서 연속으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의 신청이 있을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서의 투자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① -----

-----.

1.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또는 지식서비스 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다만, 부동산업(매매,중개,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업이 포함된 기업이라도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2. ----- 1년 -----

3.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설>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신설·증설 기업지원) ①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신설·증설 기업 지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도내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또는 지식서비스 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다만,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업이 포함된 기업이라도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

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
원이 30명 이상일 것

4.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
일부터 3년 이내일 것

5. 별표 3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50점(사업기간이 1년 미
만인 기업인 경우 36점) 이상일
것. 다만, 국내에서 연속한 사업
영위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제
11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
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
위에서 별표 3의3과 같이 하며, 기
업당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
은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
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도지사
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
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
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4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3(임대료 지원) ① 조례 제1
0조 및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 설>

토지 임대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업 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것

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5.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내일 것

② 임대료의 지원은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0범위에서 연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0년까지로 한다.

③ 임대료 지원기간 중 투자계획 완료기한까지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제24조에 따른 정산 이후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며, 투자계획 완료 이후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미달기간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의4(사천시 전략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시와 부지 매매계약일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2.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관외 사업장의 관내 이전,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신 설>

10명 이상일 것(기업이 관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3. 별표 3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인 경우 36점)일 것

4.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5. 기업이 관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부지매입 금액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며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계약일로부터 1년(단,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

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4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 용인원이 모두 제1항제2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제1항제3호의 타당성 평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⑥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융자 절차 등)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제3항의 용자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별표 4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당성 평가는 총점이 50점 이상이고 대상기업 적격평가(사업실적,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이자보상배율을 일컫는다) 점수의 합이 35점 이상이어야 한다.

⑤ (생략)

제19조(기금융자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50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42.5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평균매출액-----
총자산 증가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를 --- 35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27.5점)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보조금 등의 신청) ①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1개월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단,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은 제외)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일은 시장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공문이 도지사에게 접수된 날을 말한다.

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환수 또는 반납처분을 받은 경우 및 이 규칙의 금지·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전액환수 또는 전액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부터 5년 경과 후 신청 가능)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선행투자정산 결과 투자금액 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사후관리기간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투자 또는 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환수를 제외한 이 규칙의 금지·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일부환수 또는 일부반
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부터
3년경과 후 신청 가능)

3.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또는 사
업이행을 포기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납한 경우(포기신청
일부터 1년 6개월경과 후 신청
가능)

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인
경우(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독
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상 부채비
율이 5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는 신청 가능)

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③ 제11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
한 특별지원 대상 기업 중 도내 경
제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
다.

제22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 ③
(생략)

제24조(보조금 등의 정산) ①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

제22조의2(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보조금 등의 정산) ① -----

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정산신청서를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정산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제2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

③ (생략)

④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시장은 상·하반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매 반기 경과 후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5. (생략)

제28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다만,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은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다만,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은 제외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2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

설비투자금액의 인정범위(제2조 및 제9조 관련)

구분	인정범위
건설투자 비용	<p>▶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설계비, 기반시설설치비 포함)</p> <p>*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p> <p>(단, 단가표에 수록되지 않은 건물의 표준단가는 해당 건물과 유사한 용도·구조의 건물 표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p> <p>*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p> <p>*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p>
기계장비 구입비용	<p>▶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라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p> <p>*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만 해당)</p> <p>*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정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p> <p>*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p>
근로환경개선 시설 투자비용	<p>▶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의 건설투자비용</p> <p>*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다만, 보육시설은 제외)</p> <p>*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p>

※ 설비투자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별표 2]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제12조 및 제18조 관련)

신규 고용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10명 이상 20명 미만	1%p
20명 이상 30명 미만	2%p
30명 이상 40명 미만	3%p
40명 이상 50명 미만	4%p
50명 이상	5%p

* 신규고용인원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별표 2의2]

대규모 투자기업 타당성 평가기준(제11조 및 제17조 관련)

1.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가척도	점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 = $\frac{[(\text{직전1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3) + (\text{직전2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2) + (\text{직전3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1)]}{6}$
- * 매출액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손익}}{\text{매출액}} \times 100$
-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최근 2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 * 최근 2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 = $\frac{[(\text{직전1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2) + (\text{직전2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1)]}{3}$
- ※ 업력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2.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평가척도	점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 $\frac{[(\text{당기 매출액증가율} \times 2) + (\text{전기 매출액증가율} \times 1)]}{3}$
- * 당기 매출액증가율 = $\frac{\text{당기 매출액} - \text{전기 매출액}}{\text{전기 매출액}} \times 100$
- * 전기 매출액증가율 = $\frac{\text{전기 매출액} - \text{전전기 매출액}}{\text{전전기 매출액}} \times 100$
-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매출액 증가율(당기 매출액 증가율)로 산정
- ※ 업력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3.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평가척도	점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text{최근 3년 총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 총자산증가율} \times 2) + (\text{전기 총자산증가율} \times 1)]}{3}$$

* 총자산 : 부채와 자본총계

$$* \text{당기 총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말총자산} - \text{전기말총자산}}{\text{전기말총자산}} \times 100$$

$$* \text{전기 총자산증가율} = \frac{\text{전기말총자산} - \text{전전기말총자산}}{\text{전전기말총자산}} \times 100$$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총자산증가율(당기 총자산증가율)로 산정

※ 업력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4. 부채비율

평가척도		점수
주업종 : 제조업	주업종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30% 미만	50% 미만	5
30% 이상 ~ 6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4
60% 이상 ~ 90% 미만	100% 이상 ~ 150% 미만	3
90% 이상 ~ 120% 미만	150% 이상 ~ 200% 미만	2
120% 초과	200% 초과	1

$$* \text{최근 결산일기준 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계}}{\text{자본총계}} \times 100$$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5. 차입금 의존도

평 가 척 도	점 수
15% 미만	10
15% 이상 ~ 20% 미만	8
20% 이상 ~ 25% 미만	6
25% 이상 ~ 30% 미만	4
30% 초과	2

* 최근 결산일기준 차입금의존도 = $\frac{\text{차입금}^* \text{총계}}{\text{자산총계}} \times 100$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부채 + 유동리스부채 + 사채 + 장기차입금 + 비유동리스부채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6.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상시고용인원	점수
50명 이상	10	20명 이상 30명 미만	4
40명 이상 50명 미만	8	10명 이상 20명 미만	2
30명 이상 40명 미만	6		

7. 기업신용등급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A0 이상	1, 2 등급	10
BBB- 이상	3, 4 등급	8
BB- 이상	5 등급	6
B0 이상	6 등급	4
B0 미만	7등급 이하	2

* 기업 등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기업 대표의 개인등급으로 평가
 ※ 보조금 신청 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대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확인

8.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2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5억원당 1점

9. 사업성 분석

사업성	점 수	사업성	점 수
20% < IRR	5	5% < IRR ≤ 10%	2
15% < IRR ≤ 20%	4	IRR ≤ 5%	1
10% < IRR ≤ 15%	3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지한 사업성분석 산출 프로그램으로 산출

10. 투자기간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점 수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점 수
1년 이내	5	2.5년 이내	2
1.5년 이내	4	3년 이내	1
2년 이내	3		

※ 착공신고필증 상 착공예정일자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 폐건물 리모델링의 경우처럼 착공신고필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조금신청서 상 착공일 부터 기산

11.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점수(20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명당 0.5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0% 이상을 투자사업장에 신규 고용하면 5점 가점

12. 균형발전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 시)」 별표 5 (보조금 지원범위 및 지역구분) 적용

[별표 2의3]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바·시군비 분담률 적용	비고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5%	30	투자금액 6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6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60명 이상		35	투자금액 7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7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7%	56	투자금액 8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8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80명 이상		70	투자금액 1,0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10%	100	

[별표 3]

정산금액 산정기준(제11조, 제17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 관련)

구 분	산정방식
<p>대규모 투자 특별지원</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금액 = 보조금액 × (1 - 투자금액 미달률(고용인원 미달률)) * 투자금액 미달률 = $\frac{\text{투자계획금액} - \text{실제 투자금액}}{\text{투자계획금액}}$ * 고용인원 미달률 = $\frac{\text{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 \text{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text{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div> <p style="text-align: center;">※ 정산금액이 1차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수하며,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p>
<p>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전략산업 특별지원, 신설·증설 기업 지원</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금액 = 보조금액 × (1 - $\frac{\text{투자금액 미달률} + \text{고용인원 미달률}}{2}$) * 투자금액 미달률 = $\frac{\text{투자계획금액} - \text{실제 투자금액}}{\text{투자계획금액}}$ * 고용인원 미달률 = $\frac{\text{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 \text{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text{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div> <p style="text-align: center;">※ 정산금액이 1차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수하며,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모두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p>

[별표 3의2]

신설·중설 기업지원 타당성 평가기준(제18조의2 및 제18조의4 관련)

1. 최근 1년이상 ~ 3년미만 평균매출액

평균매출액	점 수	평균매출액	점 수
100억원 이상	20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
7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6	30억원 미만	4
50억원 이상 75억원 미만	12		

* 최근 3년미만 사업실적의 평균매출
(직전1년도매출액 + 직전2년도 매출액) ÷ 2(단, 사업기간이 1년인 기업은 직전1년도 매출액)

2. 신규고용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 상시고용인원	점수
30명 이상	20

3.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	점수	신용등급	점수
BBB- 이상	20	CCC- 이상	8
BB- 이상	16	CCC-미만	4
B0 이상	12		

* 보조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4.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평 가 척 도	점 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text{최근 3년 총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 총자산증가율} \times 2) + (\text{전기 총자산증가율} \times 1)]}{3}$$

* 총자산 : 부채와 자본총계

$$* \text{당기 총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말 총자산} - \text{전기말 총자산}}{\text{전기말 총자산}} \times 100$$

$$* \text{전기 총자산증가율} = \frac{\text{전기말 총자산} - \text{전전기말 총자산}}{\text{전전기말 총자산}} \times 100$$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총자산증가율(당기 총자산증가율)로 산정

* 업력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5. 부채비율

평 가 척 도		점 수
주업종: 제조업	주업종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30% 미만	50% 미만	5
30% 이상 ~ 6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4
60% 이상 ~ 90% 미만	100% 이상 ~ 150% 미만	3
90% 이상 ~ 120% 미만	150% 이상 ~ 200% 미만	2
120% 초과	200% 초과	1

$$* \text{최근 결산일기준 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계}}{\text{자본총계}} \times 100$$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6. 차입금 의존도

평 가 척 도	점수	평 가 척 도	점수
15% 미만	10	25% 이상 ~ 30% 미만	4
15% 이상 ~ 20% 미만	8	30% 초과	2
20% 이상 ~ 25% 미만	6		

$$* \text{최근 결산일기준 차입금의존도} = \frac{\text{차입금*총계}}{\text{자산총계}} \times 100$$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부채 + 유동리스부채 + 사채 + 장기차입금 + 비유동리스부채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7.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1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20억원당 2점

8. 투자기간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	점 수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	점 수
1.5년 이내	10	2.5년 이내	6
2년 이내	8	3년 이내	4

* 착공신고필증 상 착공예정일자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 폐건물 리모델링의 경우처럼 착공신고필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조금신청서 상 착공일부터 기산

9.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

신규고용	점수
30명 이상 추가 신규고용	1명당 0.5점

※ 30명 이상 추가 신규고용 인원이 경상남도 출생지를 둔 청년 신규고용인 경우 1명당 0.5점 추가 가점 부여

- 청년 이란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15세~34세를 의미

10. 균형발전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별표 5 (보조금 지원범위 및 지역구분) 적용

[별표 3의3]

신설·증설기업 지원 기준(제18조의2 관련)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바시군비 분담률 적용	비고
신설·증설 기업지원	설비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 10%	10	설비투자금액 150억원 미만 해당
	설비투자금액이 15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15	설비투자금액 200억원 미만 해당
	설비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20	설비투자금액 250억원 미만 해당
	설비투자금액이 25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25	설비투자금액 300억원 미만 해당
	설비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30	

※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추가고용 시 추가고용 1인당 2,0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별표 4]

기금 용자 타당성 평가표(제19조 관련)

① 최근 1년이상 ~ 3년미만 평균매출액

평균매출액		점 수
일 반	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5
7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2
50억원 이상 75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9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6
30억원 미만	15억원 미만	3

* 최근 3년미만 사업실적의 평균매출
 (직전1년도매출액 + 직전2년도 매출액) ÷ 2(단, 사업기간이 1년인 기업은 직전1년도 매출액)

②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일 반	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	
25명 이상	20명 이상	15
20명 이상 25명 미만	15명 이상 20명 미만	12
15명 이상 20명 미만	10명 이상 15명 미만	9
10명 이상 1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6
5명 이상 10명 미만	5명 미만	3

③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	점수
BBB- 이상	20
BB- 이상	16
B0 이상	12
CCC- 이상	8
CCC-미만	4

※ 용자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④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평 가 척 도	점 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 $\frac{[(\text{당기 총자산 증가율} \times 2) + (\text{전기 총자산 증가율} \times 1)]}{3}$

* 총자산 : 부채와 자본총계

* 당기 총자산 증가율 = $\frac{\text{당기말 총자산} - \text{전기말 총자산}}{\text{전기말 총자산}} \times 100$

* 전기 총자산 증가율 = $\frac{\text{전기말 총자산} - \text{전전기말 총자산}}{\text{전전기말 총자산}} \times 100$

※ 업력 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총자산 증가율(당기 총자산 증가율)로 산정

※ 업력 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⑤ 부채비율

평 가 척 도		점 수
일 반	연구소·연구개발업·ICT기업·사회적기업	
30% 미만	50% 미만	5
30% 이상 ~ 6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4
60% 이상 ~ 90% 미만	100% 이상 ~ 150% 미만	3
90% 이상 ~ 120% 미만	150% 이상 ~ 200% 미만	2
120% 초과	200% 초과	1

* 최근 결산일기준 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계}}{\text{자본총계}} \times 100$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⑥ 차입금 의존도

평 가 척 도	점 수
15% 미만	10
15% 이상 ~ 20% 미만	8
20% 이상 ~ 25% 미만	6
25% 이상 ~ 30% 미만	4
30% 초과	2

* 최근 결산일기준 차입금의존도 = $\frac{\text{차입금*총계}}{\text{자산총계}} \times 100$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부채 + 유동리스부채 + 사채 + 장기차입금 + 비유동리스부채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7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1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5억원당 1점

※ 연구소 · 연구개발업 · ICT기업 · 사회적기업은 2억원당 1점

8 투자기간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	점수
1년 이내	10
1.5년 이내	8
2년 이내	6
2.5년 이내	4
3년 이내	2

* 착공신고필증 상 착공예정일자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 폐건물 리모델링의 경우처럼 착공신고필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 융자금신청서 상 착공일부
 기산

9 신규고용

신규고용	점수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 별표 1(기금 용자 지역별 지원 기준) 신규상시고용인원	10

* 지원기준 초과 상시고용인원 1인당 0.5점 가점 부여

8 균형발전 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
 시)」
 별표 5 (보조금 지원범위 및 지역구분) 적용

[별표 5]

보조금 환수 기준(제26조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전액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조례 제26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조례 제26조제1항제2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경상남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부분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조례 제26조제1항제7호) (1) 원칙 : 사후관리기간 종료시점에 사후관리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평균 달성률을 계산하여 환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수액 = 보조금 × (1 - 평균달성률) * 평균달성률 = 사업이행기간 연도별 고용인원 달성률의 합 / 사업이행기간 * 고용인원달성률 = 연평균 상시고용인원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div>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적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별표5에 따른 정산시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 이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초과시 :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② 별표5에 따른 정산시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 이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미달시 :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 ※ <u>평균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u> (2) 예외(미환수) : ① 정산 시 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동시에 ② 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 ▶ 사후관리기간 내 휴·폐업(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input type="checkbox"/>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도외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부지매입비 융자금 <input type="checkbox"/>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임대료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본점 이전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사천시 전략산업 특별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신청일		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		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		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수령일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	천원	보조금(융자금) 명	지원 금액
			천원
			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	천원	보조금(융자금) 명	지원 금액
			천원
			천원

구분		투자계획 기준	정산기준
투자 금액	부지매입비	천원	천원
	설비투자금	천원	천원
신규 고용인원		명	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일부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사유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장 귀하

사 업 (투 자) 계 획 서

작 성 일 :

기업체명 : (인)

대 표 자 :

귀사에서 제출한 일체의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인센티브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다만,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신청서는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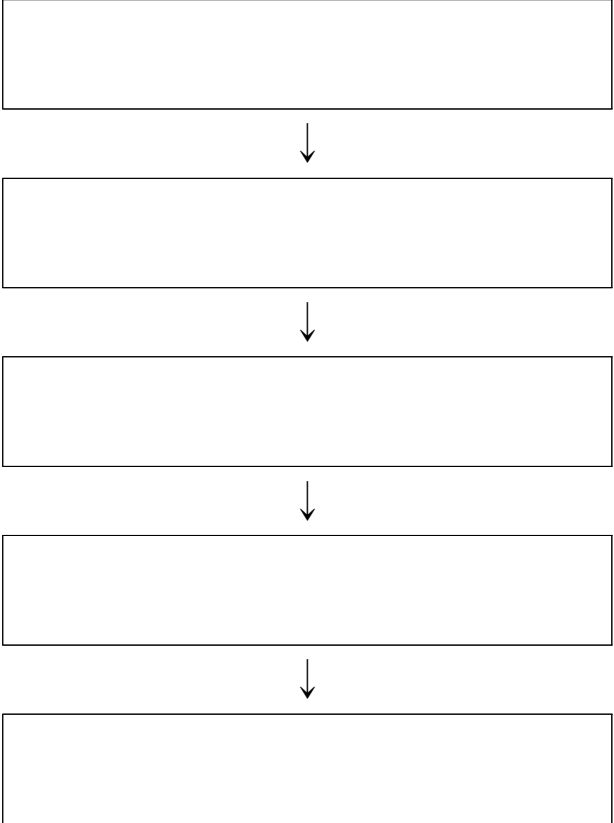
※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

□ 투자기업 개요

기업체명		대표자	
설립일자		법인(주민)등록번호	
홈페이지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주요생산품			
건설업면허 보유여부	<input type="checkbox"/> 보유 <input type="checkbox"/> 없음	건설업명	
회 사 소 개			

산업 분석

생산공정도

생산공정도	생산공장 요약 설명
	

□ 투자 설비 내역서

품명	규격(용량)	내용년수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용도)

□ 투자의 개요

기존 사업장 주소	본사		소유 / 임차		
	공장		소유 / 임차		
	연구소		소유 / 임차		
투자지 주소					소유 / 임차
투자기간					
토지매입계약체결일		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투자완료(예정)일			
투자면적(단위 : m²)					
구 분	부지	건물용지	건물연면적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계					
투자금액(단위 : 천원)					
구 분	계	N	N + 1	N + 2	N + 3
계					
토지 매입가액					
설비투자 금액	소계				
	건설투자				
	기계장비				
	근로환경				
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					
건설투자					
기계장비					
근로환경					

투자의 사유

□ 자금조달 계획

자금재원 조달계획(단위 : 천원)						
투자금액	자기자본		외부조달		계	
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자기자본						
외부자본	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참고사항						
기업 신용등급	<input type="checkbox"/> AAA <input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 <input type="checkbox"/> A <input type="checkbox"/> BBB+ <input type="checkbox"/> BBB <input type="checkbox"/> BBB- <input type="checkbox"/> BB+ <input type="checkbox"/> BB <input type="checkbox"/> BB- <input type="checkbox"/> B+ <input type="checkbox"/> B <input type="checkbox"/> B- <input type="checkbox"/> CCC+ <input type="checkbox"/> CCC <input type="checkbox"/> CCC- <input type="checkbox"/> CC <input type="checkbox"/> C					
부채비율	총부채 (A)		자기자본 (B)		부채비율 (A/B)	%
순유동자산	유동자산 (A)		유동부채 (B)		순유동자산 (A-B)	

고용 계획

고용계획(단위 : 명)						
구분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				투자 후(A+B)
		N* *신청년도	N+1	N+2	N+3	
계						
연구·개발						
사무·영업						
생산						
고용사유						
연구·개발직						
사무·영업직						
생산직						

최근 3년간 주요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 순이익	영업 이익	이자 비용
N*-1 *신청년도							
N-2							
N-3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신규투자(안)의 사업성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								
연 도	N*+1 *사업개시일	N+2	N+3	N+4	N+5	N+6	N+7	N+8	
매출액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CAGR)			매출액		%		영업이익		%
사업성 전망									

신청지역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대체 투자 지역과 비교시 장·단점 포함)

- 향후 5년간 지역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제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융자금) 투자이행확약서

○ 관련 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보조금(융자금) 신청 당시 제출한 투자계획 등에 따른 투자규모, 고용규모, 투자 완료일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정산할 것을 확약합니다.

○ 투자사업장(소재지)	
○ 투자기간	~ (년)
○ 총 투자규모	000 천원
- 입지 투자	000 천원
- 설비 투자	000 천원
○ 고용계획(명)	00 명
○ 보조금 지원규모	000 천원
- 00 보조금	000 천원
- 00 보조금	000 천원
○ 사후관리기간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까지

관련 규정의 지원대상, 요건, 절차,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의 조기상환, 융자금의 이자부과, 기존 사업장 유지 등의 내용 및 정산 후 사후관리기간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융자금) 환수(조기상환) 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수(조기상환)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인 일 : 20__년 __월 __일

확 약 자 : (기업명) (자필) (직인)

(대표자) (자필) (서명)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공고 제2022-1416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1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나.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나.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현재 사용중인 서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3. 주요내용

①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소방에 관련된 업무협약의 재산관리관 지정(안 제4조제1항제4호)
- 나.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추가(안 제6조제1항제2호)
- 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기준 신설(안 제12조제2항)
- 라. 공유재산의 횡수별 또는 시간대별 사용료·대부료 산식 신설(안 제28조의2)
- 마.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8조제1항제12호 및 제38조제2항)
- 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0조제5항)

②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개정
- 나.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931, FAX : 831-6028)

사 천 시 공 보

제 802 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회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방에 관련된 업무협의 재산관리관 지정(안 제4조제1항제4호)

나.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추가(안 제6조제1항제2호)

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기준 신설(안 제12조제2항)

라. 공유재산의 횡수별 또는 시간대별 사용료·대부료 산식 신설(안 제28조의2)

마.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8조제1항제12호 및 제38조제2항)

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0조제5항)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0. . ~ 2022. 1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사업소에서 사용하는”을 “사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을 “사천시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관”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이 있는 소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방업무 등과 관련하여 무상사용허가, 신·증축, 이전 등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공유재산 - 재난업무담당부서장

⑧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사용허가, 대부 등의 관리사항이 있을 경우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새울행정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⑨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활용 가능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유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제10조의3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제4호”를 “법 제16조제2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항제6호”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유재산 건축물 리모델링을 위하여 1억원 이상의 지출이 수반되는 경우(단, 용도변경을 위한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사용·대부료” 를 “무단사용 여부 및 사용료·대부료” 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5조 중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을 “무상사용 허가대상” 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제18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을 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수익을 허가함” 을 “사용허가함” 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절차)” 를 “(사용허가의 절차)”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 를 “사용허가” 로,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를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 를 각각 “사용허가” 로 한다.

제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사용허가 기간 중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 권리를 포기할 경우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수익 권리 포기서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해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계산해서 환급해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를 “(사용허가부의 비치)”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부” 를 “사용허가부” 로 한다.

제22조 중 “사용수익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하는” 을 각각 “사용허가하는” 으로 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대부 기간 중에 대부 받은 자가 대부계약 해지를 할 경우 30일 전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대부계약 해지서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해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남은 기간의 대부료를 일할계산 해서 환급해야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사용·수익을 허가” 를 “사용허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용·수익을 허가한” 을 각각 “사용허가한” 으로 한다.

제26조 중 “영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을 “영 제32조제3항” 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제3호 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 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횡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대부료) 영 제14조제2항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관 등 횡수별 또는 시간별로 사용료·대부료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1. 횡수별 사용료·대부료

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frac{\text{산출한 연간 사용료·대부료}}{365} \times \text{사용횟수}$$

365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2. 시간별 사용료·대부료

$$\frac{\text{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대부료}}{365 \times 24} \times \text{사용 횟수}$$

제30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121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써” 를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사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5항” 을 “제6항까지” 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14조제7항” 을 “영 제14조제8항” 으로 한다.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각종사업 등으로 토지 및 건물이 편입되어 주거지(주민등록지)를 이주해야 할 때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 가. 보상대상 토지 및 건물을 시와 협의한 날부터 1년 이내
- 나. 보상대상 토지 및 건물이 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을 경우
- 다. 매각할 토지 대장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라. 매각할 토지가 보상받은 자의 주민등록지의 토지거나 연접한 읍·면·동 지역의 토지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있거나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시설을 제외한다.

-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연구개발업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및 제4항의 벤처기업과 벤처기업 집적시설

제4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3항까지” 를 “제5항까지의” 로 한다.

⑤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1. 1억원 이하: 1년 이내 3회 분납
- 2. 5억원 이하: 2년 이내 6회 분납
- 3. 5억원 초과: 3년 이내 9회 분납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제50조제2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51조 중 “총괄재산관리관”을 “시장”으로, “증감현황”을 “증감 및 현황”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재산관리관)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본청, 직속기관, <u>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u> - 업무주관부서장</p> <p>2. <u>사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u> - 사천시의회 사무국장</p> <p>3. (생략)</p> <p><u><신설></u></p> <p>4. 제1호부터 <u>제3호까지</u>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산관리업무담당과장</p> <p>② 재산관리관은 <u>소관 공유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u> 책임을 진다.</p> <p>③ ~ ⑦ (생략)</p> <p><u><신설></u></p>	<p>제4조(재산관리관) ① ----- -----.</p> <p>1. ----- <u>사업소</u> ----- -----</p> <p>2. <u>사천시의회</u> ----- -----</p> <p>3. (현행과 같음)</p> <p>4. <u>소방업무 등과 관련하여 무상사용허가, 신·증축, 이전 등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공유재산</u> - 재난 업무담당부서장</p> <p>5. ----- <u>제4호</u>----- -----</p> <p>② ----- <u>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이 있는 소관</u> ----- --.</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p>⑧ <u>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사용허가, 대부 등의 관리사항이 있을 경우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내용을 새울행정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u></p>

<신 설>

-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 요건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 ⑫ (생 략)

제6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신 설>

⑨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활용 가능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유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0조의3제1항제3호-----

 -----.

<삭 제>

⑤ ~ ⑫ (현행과 같음)

제6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 제2항제6호-----
 -----.

1. (현행과 같음)

2. 공유재산 건축물 리모델링을 위하여 1억원 이상의 지출이 수반되는 경우(단, 용도변경을 위한

2. (생략)

② (생략)

제8조(실태조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 7. (생략)

③·④ (생략)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괄 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제3호의 재산관리관인 녹지공원과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무단사용 여부 및 사용료·대부료 -----

3. ~ 7.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 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공
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
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
설물 사용에 필요한 가까운 토지)
로 제한한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시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
가 시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 하여야 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수익을 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2. 사용·수익을 허가함으로써 재
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시키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
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
미터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

----- 무상사용 허
가대상 -----

-----.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
----- 사용허가 -----

-----.

② -----
----- 사용허가 ---
-----.

1. (현행과 같음)
2. 사용허가함-----

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써 사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절차) ①·

제19조(사용허가의 절차) ①·② (현

② (생략)

행과 같음)

③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 사용허가-----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5. 사용허가 -----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6. 사용허가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사용허가 기간 중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 권리를 포기할 경우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수익 권리 포기서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해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 해서 환급해야 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

산관리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사용허가부-----

-----.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
재산에 대한 사용료, 일시사용허
가, 전세금의 평가, 그 밖의 사용수
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3조(사용료의 감면) ① 영 제17조
제7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
용·수익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영 제17조제7항제2호에 따라 행
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
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
으로 한다.

③·④ (생략)

제24조(대부신청) ①·② (생략)

<신설>

제24조의2(수익계약에 따른 대부 등)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영 제2
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사용허가-----

-----.

제23조(사용료의 감면) ① -----
----- 사용허
가하는 -----
-----.

② -----
-- 사용허가하는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대부신청)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대부 기간 중에 대부 받은 자가
대부계약 해지를 할 경우 30일 전
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대부계약
해지서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해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남은 기간의
대부료를 일할계산해서 환급해야
한다.

제24조의2(수익계약에 따른 대부 등)
① -----

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른 대부 및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의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하여 경작자에게 1천제곱미터 이하를 수의계약에 따른 대부 및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

----- 사용허가-----

-.
② -----

-----.

1. -----
- 사용허가한 -----

2. -----

----- 사용허가한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 2. (생략)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4. · 5. (생략)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 5. (생략)

6.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창업·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7. ~ 13. (생략)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

1. · 2. (현행과 같음)

3.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

4.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5. (현행과 같음)

6.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7. ~ 13. (현행과 같음)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

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15. ~ 17. (생략)

⑥ ~ ⑨ (생략)

<신설>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료 전액 감면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고

15. ~ 17. (현행과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횡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대부료) 영 제14조제2항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관 등 횡수별 또는 시간별로 사용료·대부료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1. 횡수별 사용료·대부료

$$\frac{\text{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대부료}}{365} \times \text{사용 횡수}$$

2. 시간별 사용료·대부료

$$\frac{\text{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대부료}}{365 \times 24} \times \text{사용 횡수}$$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

-----.

1. -----

가. ----- 제12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

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기업

나. ~ 사. (생략)

2. (생략)

3. 대부분 50퍼센트 감경

가. ~ 바. (생략)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대부분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33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단, 제1호

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

나. ~ 사.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삭제>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제6항까지-----

-----.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33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4조제8항 -----

-----.

의 경우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 3. (생략)

③·④ 삭제

⑤ (생략)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략)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각종사업 등으로 토지 및 건물이 편입되어 주거지(주민등록지)를 이주해야 할 때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 보상대상 토지 및 건물을 시와 협의한 날부터 1년 이내
나. 보상대상 토지 및 건물이 시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을 경우
다. 매각할 토지 대장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라. 매각할 토지가 보상받은 자의 주민등록지의 토지거나 연결한 읍·면·동 지역의 토지

<신 설>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③ (생략)
④ 삭제
<신 설>

⑤ 제1항부터 3항까지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려면 분할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있거나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시설을 제외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연구개발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및 제4항의 벤처기업과 벤처기업 집적시설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⑤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억원 이하: 1년 이내 3회 분납
2. 5억원 이하: 2년 이내 6회 분납
3. 5억원 초과: 3년 이내 9회 분납

⑥ ----- 제5항까지의 -----

-----.

제50조(공유재산의 분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필할 경우에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에게 맡겨야 한다.

제51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92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유재산 운영상황(증감현황, 현재액 등)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0조(공유재산의 분필)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법인등-----
-----.

제51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시장-----

--증감 및 현황-----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
-----.

[별지 제3호서식]

(안쪽)

공유재산 [<input type="checkbox"/> 사 용 허 가 <input type="checkbox"/> 대 부 수]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매 수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재 산 의 표 시			신청 면적 (m ²)	용도	비고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m ²)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 부 수]를 신청합니다. () 매 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연번	구 비 서 류	목 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1	신청인 신분증(필수 지참)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동 의 []
2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해당할 경우)	대부·사용허가시 현재 거주지(사천시) 확인	동 의 []
3	사업자등록증(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	동 의 []
4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해당할 경우)	경작 목적인 경우 농업인 확인	동 의 []
5	대리인 신분증(해당할 경우 지참)	신분 확인	동 의 []

(뒤쪽)

○ 본인은 사천시에 위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른 아래의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사천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매수 신청 계약체결에 활용
2. 수집·이용할 개인정보항목: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용허가계약체결 신청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보유·이용
4.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천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매수 계약체결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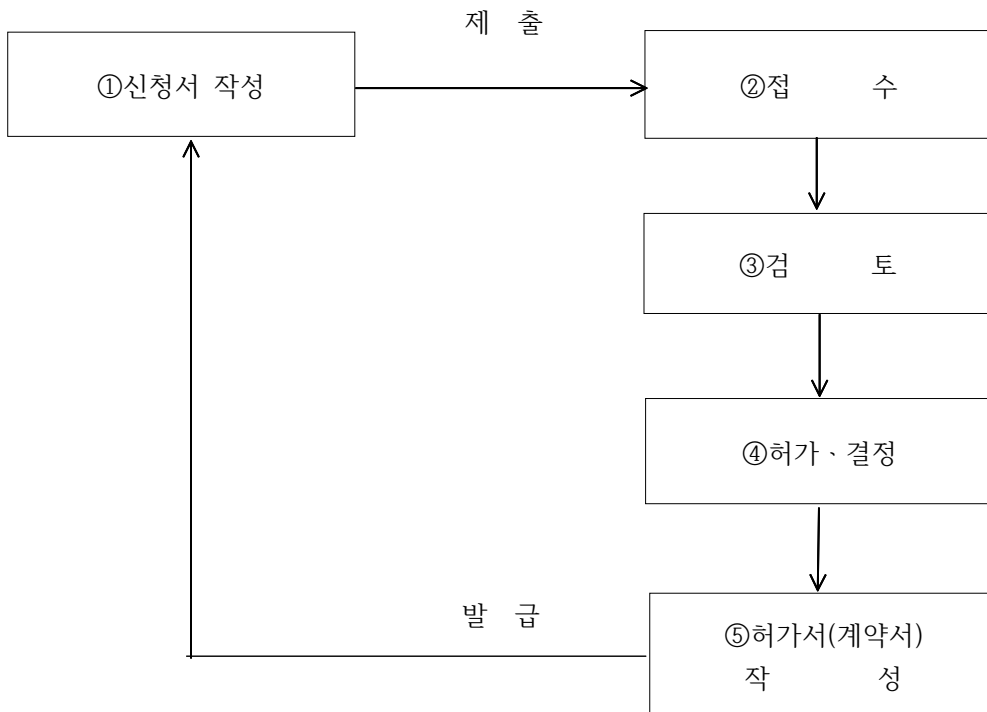
○ 본인은 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업무 처리 절차도 >



공유재산 (유상·무상) 사용허가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기 간			
<p>「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사 천 시 장 (인) (재산관리관 ○○과장)</p>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천시는 사용허가를 받는자(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이하 “허가재산”이라 한다)을 〇〇〇〇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년)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최초연도 사용료는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다음 연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매년 계산하여 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사천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할납부는 사천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른 이자를 아래와 같이 분할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지정한 날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분납금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회수	사 용 료(원)			납부기한	비고
	분 납 금	이 자	계		
1		행정안전부 고사이자율			
2		”			
3		”			

③ 제2항의 경우 “사용자”는 사용허가 개시일 전까지 「시행령」 제14조제10항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그 금액에 대해 사천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자”는 허가재산에 대하여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에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후 부담한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허가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 제한) “사용자”는 사천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재산을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허가재산의 원상을 사천시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허가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천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제6호의 경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한다.

제12조(청문) 사천시는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수익권 포기) “사용자”는 사용·수익 권리를 포기·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1개월 전에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권리 포기서를 사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사천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사천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사천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사천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금 징수)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허가조건의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사천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허가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사천시가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 규정의 준용)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조례」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효력발생) 이 허가서의 효력은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발생하며, 제2조에서 명시한 사용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사용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된다.

“주” 각 재산관리관은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부계약 해지 신청서

재 산 의 표 기			대 부 면적(m ²)	소 유 자	비 고
소 재 지 번	지 목	면적(m ²)			

상기 공유재산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대부받아 사용하여 왔으나, ○○○○년 ○○월 ○○일부터는 ○○○○○사유로 인하여 계속 대부할 의사가 없기에 대부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최초 허가 당시로 원상복구 후 반환하며 원상복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더불어 대부계약 신청서 제출 이후, 상기 공유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매각하여도 이의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휴대폰:)

사 천 시 장 귀하

관 련 법 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4. 20.>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 3. 31., 2022.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2022 - 제 호
번 호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회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별지 서식을 현재 사용중인 서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개정

나.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0. . ~ 2022. 1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로 재산별로 작성해야 한다.

제3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 례” 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작성하 여야 하는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 지 제1호부터 별지 제10서식으로 재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u></p> <p><u>제3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별지 제11호부터 별지 제16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예산편성 전 의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u>제2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 례” 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 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 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로 재산별 로 작성해야 한다.</u></p> <p><u>제3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별 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 식까지에 따른다.</u></p>

[별지 제1호서식]

재산번호 123456

회계명 일반회계

공유재산 관리대장 (토지)

작성자		확인	
-----	--	----	--

행정복지국 ○○과		지번								
		도로명								
구 분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부	색	인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면적 (㎡)	취득시	용도	연혁	현황 및 상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현재				년도	내용	금액			
토지 등급	취득시									
	현재									
농지 등급	취득시									
	현재									

관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원)	전소유자	등기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고						

변동(이력)상황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대부 및 사용현황

해당기간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료(원)	비고

재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210mm×297mm(중성지 75g/㎡)

[별지 제2호서식]

재산번호 1234

회 계 명 일반회계

공유재산 관리대장 (건 물)

작성 자		확 인	
---------	--	--------	--

문화관광국 ○○○○과		지번								
		도로명								
구 분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부	색	인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연 면 적 (m^2)	취득시 현 재			용 도	연 혁	현 황 및 상 태	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년 도	내 용	금 액	
건축연월일										
건축가격(원)										
구 조	구성재료									
	지급종료									
	중수									
	단면적(m^2)									

관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원)	전소유자	등기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변동(이력)상황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대부 및 사용현황

해당기간	대부면적(m^2)	대부목적	대부료(원)	비고

재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210mm×297mm(중성지 75g/ m^2)

[별지 제3호서식]

재산번호 4567

회 계 명 일반회계

공유재산 관리대장 (공작물)

작성 자		확 인	
---------	--	--------	--

안전도시국 ○○과		지번								
		도로명								
구 분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부	색	인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관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원)	전소유자	등기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변동(이력)상황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대부 및 사용현황

해당기간	대부면적(m ²)	대부목적	대부료(원)	비고

재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210mm×297mm(중성지 75g/m²)

[별지 제4호서식]

재산번호 491023

회 계 명 일반회계

공유재산 관리대장 (기계기구)

작성 자		확 인	
---------	--	--------	--

산업관광국 ○○과		지번						
		도로명						
구 분	대분류		제조연월일		규격 용량	구 부	형	
	중분류		제조사					
	연락		제조번호		구입 금액			
			명칭					
용도								

관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원)	전소유자	등기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변동(이력)상황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재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210mm×297mm(중성지 75g/m²)

[별지 제5호서식]

재산번호 1234

회계명 일반회계

공유재산 관리대장 (입 목 족)

작성 자		확 인	
---------	--	--------	--

항공경제국 ○○○○과		지번					
		도로명					
구 분	대분류		주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분	색 인
	중분류					등기부등본	
	소분류					배 치 도	
	세분류					평 면 도	
수종		용 도	연 혁	현황 및 상태	관리비투자 상황		
본 수		(본 주)					
식 재 상 황	년 월 일						
	본 수						
	면 적						
	식재자						

관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원)	전소유자	등기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변동(이력)상황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대부 및 사용현황

해당기간	대부면적(m ²)	대부목적	대부료(원)	비고

재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210mm×297mm(중성지 75g/m²)

[별지 제6호서식]

재산번호 12345

회 계 명 일반회계

공유재산 관리대장 (선 박)

작성 자		확 인	
---------	--	--------	--

안전도시국 ○○과		지번								
		도로명								
구 분	대분류				부 속 재 산	부 속 서 류	구	부	색	인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주요설비 명칭	및 개수	용 도	깊 이	m	향해구역					
		선 적 향	넓 이	m	최대적재 인원					
		등 연 월 일	깊 이	m	차 수 연 월 일					
		등록번호	속 력		준 공 연 월 일					
		신호부자	주 기 외 형		제 조 자					
		신체자료	정 격 출 력		총 톤 수					

관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원)	전소유자	등기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변동(이력)상황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재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록	대조	비고

+210mm×297mm(중성지 75g/m²)

[별지 제7호서식]

재산번호 1234

회계명 일반회계

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작성 자		확 인	
---------	--	--------	--

행정복지구 ○○○○○○과		종 류					
재 산	지번			지목			부 속 서 류
	도로명						
	면적	m ² 가액					
사 용 자	주 소						사 용 목 적
	성 명		전 화 번 호				
사용기간			갱 신 기 간				
사 용 료	유 상			무 상			

관리취득상황

취득연월일	취득원인	취득금액(원)	전소유자	등기일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변동(이력)상황

날짜	변동사유	변경전	변경후	내역	비고

+210mm×297mm(중성지 75g/m²)

[별지 제8호서식]

재산번호 1234

회 계 명 일반회계

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작성 자		확 인	
---------	--	--------	--

행정복지구 ○○○○○○과		종 목			등록번호				
취 득	연월일	방법		금액		소유자		부 속 서 류	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	연월일	문서 대호	증 감 사 유	증 가		감 소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자 산 재평가	년월일	재평가 가액	재평가 차 액	과 표 또는 평가액		평가자	기 록	대조	비 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년월일	차수자 주 소	성 명	내용	대부 기간	대부료	기 록	대조	비 고
비 고									

+210mm×297mm(중성지 75g/m²)

[별지 제9호서식]

재산번호 1234

회 계 명 일반회계

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작성 자		확 인	
---------	--	--------	--

행정복지국 ○○○○○○과		종 목													
주식 등 종류											명칭				
												주소			
1주당 액면금액													총지분 금액		
보관기관												재산 관리관			
출 자 연 혁	연월일	금 액				변 동 사 유							사업내용		
											자 본 금				
												설립연월일			
연 월 일	적 요 (증감 사유)	증		감		현 재		비고 (출자 재원등)	기 록	대 조					
		수량	납입 금액	수량	납입 금액	수량	납입 금액								

+210mm×297mm(중성지 75g/m²)

[별지 제10호서식]

재산번호 1234

회계명 일반회계

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

작성 자		확 인	
---------	--	--------	--

신탁종류		수 탁 자	법인명			
재산관리관			대표자			
신탁계약기간	부터 까지		주소			
신탁계산시기			전화번호			
신탁의목적						
신탁기간	소재지	지목	수량	가격	비고	

2면

증 감	년월일	적 요 (증감사유)	증		감		현 재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이								
동								
상								
황								
기 타								

[별지 제17호서식]

공유재산 [<input type="checkbox"/> 사용료 <input type="checkbox"/> 대부료]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재 산 의 표 시			사 용 면 적 (m ²)	감 면 사 유	감 면 율	비 고
소 재 지	지 목	공부면적 (m ²)				
<p>「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제30조에 따라</p> <p>위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를 감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사천시장 귀하</p>						
구비서류	감면신청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없 음

210mm×297mm(중성지 75g/m²)

210mm×297mm(중성지 75g/m²)

[별지 제18호서식]

공유재산 [<input type="checkbox"/> 사용료 <input type="checkbox"/> 매각대금] 분할납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재 산 의 표 시			신청 면적 (m ²)	신청사유	분 납 방 법	비 고
소 재 지	지 목	공부면적 (m ²)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1년에()회	
					1년에()회	
					1년에()회	
					1년에()회	
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						
					()년에 ()회	
					()년에 ()회	
					()년에 ()회	
					()년에 ()회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3조·제40조·제46조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을(를) 나누어 내려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없 음

[별지 제19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m ²)	대부면적(m ²)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사천시장(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대부 받은 자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와의 대부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제3조(대부료) ①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 산정액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제4조(대부료 납부) ① “임차인”은 대부료를 “임대인”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

회수	대 부 료(원)			납부기한	비고
	분 납 금	이 자	계		
1		행정안전부 고시이자율			
2		”			
3		”			

※ 제1회차는 계약금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 “임차인”은 대부 계약일까지 「시행령」 제32조제5항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그 금액에 대해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임차인”은 제1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손해보험) “임대인”이 대부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임차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임차인”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해제) ①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차인”에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2. “임차인”이 계약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임대인”이 인정할 때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4조 또는 제7조를 위반한 때
5. “임차인”이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6. “임차인”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7.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8. 그 밖에 “임차인”이 공유재산관계법령 및 위 계약조항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임대인”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보상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손실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액은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결정하고, “임차인”은 보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이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전에 대부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지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임대인”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의 소속직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임대인”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 대부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확인) “임차인”이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위반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차인”은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합의) “임차인”이 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결정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임대자) 사 천 시(3824)
위 대표자 사 천 시 장 (인)
(재산관리관 회 계 과 장)

임차인(임차자) (서명 또는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예정가격 평정조서

대상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매각면적 (m ²)	비고
<가격평정자료>						
감정평가 금액	감정평가법인등(1)	감정평가법인등(2)		평균금액(A)		
시 가 (B)	원					
부대비용 (C)	감정평가수수료	토지측량수수료		기 타		
	원	원		원		
예정가격 산정의견	<p>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산술 평균액에 감정평가 및 측량 등에 소요된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매각(매수·교환·대부) 예정가격을 산정코자 함.</p>					
예정가격 (B+C)	원					
<p>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산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p>						

[별지 제21호서식]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

○ 매매재산의 표시

구분	소재지	재산의 표시			매각금액 (원)	계약일자	매각대금 완납일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				
토지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사천시장(이하 “매도자”이라 한다.)과

(이하“매수자”라 한다.)간에 다음 각 조의 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매도자”는 위의 표시재산을 “매수자”에게 일금 원으로 매각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 원을 계약체결일에 “매도자”에게 납부한다.

제3조(잔여대금의 납부) ①“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의 금액을 제외한 금 원을 년 월 일까지 “매도자”에게 내야 하며,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할 시에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회수	매 각 대 금(원)			납부기한	비고
	분 납 금	이 자	계		
1		행정안전부 고시이자율			
2		”			
3		”			

②“매수자”는 제1항의 분할납부 기간 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인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매도자”가 부담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매도자”에게 내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지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내야 한다.

제4조(납부시점) ①제2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는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2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납부방법) “매수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소유권 이전) “매도자”는 계약에 따라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사용
2.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3.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그 밖의 제한 물권의 설정
4.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 목적 변경

제8조(계약 해제) ①“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매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제3조에 따른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②“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매각재산의 반환)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제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합의) “매수자”는 본 계약 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매도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소유권 이전시점) “매수자”는 제1조에 규정한 매각 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의 비용은 일체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2조(구획정리) “매도자”는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 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

변상금 사전 통지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부 과 내 용						
재 산 의 표 시			점유면 적 (m ²)	부과 기간	(예상)변상금 (원)	비고
소 재 지	지목	면적 (m ²)				
<p>「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_____년 월 일까지 불임의 서식에 따른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p>						
<p>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p>						
<p>_____년 _____월 _____일</p>						
<p>사 천 시 장</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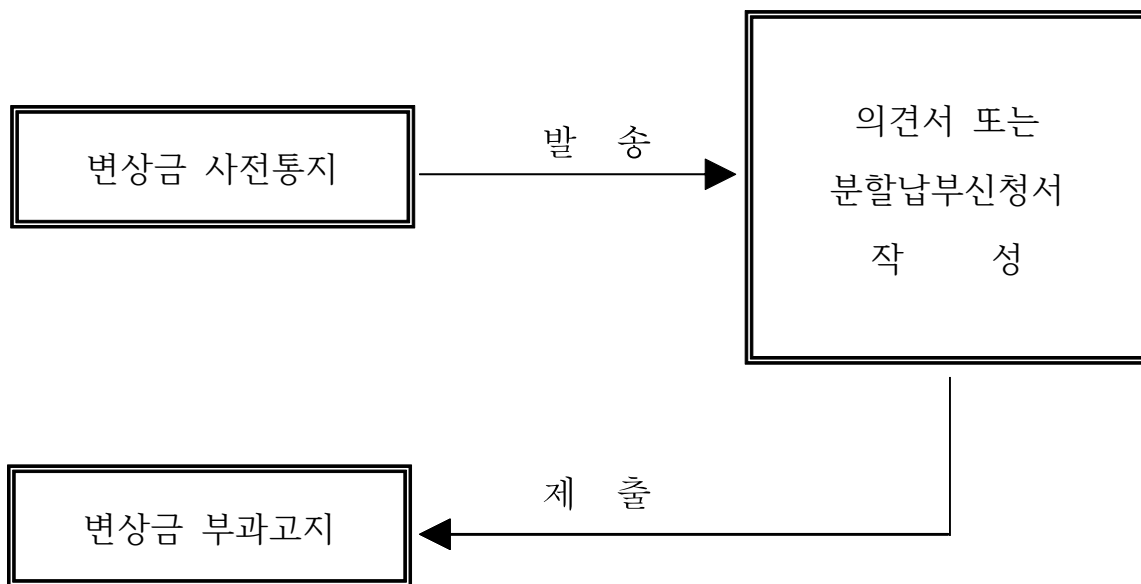
(뒷면)

※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해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
한 기간을 곱한 금액

처 리 기 관

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별지 제23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변상금 부과 통지 내역				의견	비고
소재지	점유면적 (㎡)	부과기간	변상금 (원)		

※기타 의견(입증서류 등 첨부)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공고 제2022-1418호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과반수 및 위원의 다양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서면심의의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 나. 서면심의 근거 마련(안 제11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세무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889, FAX: 831-6099)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세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과반수 및 위원의 다양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서면심의의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나. 서면심의 근거 마련(안 제11조)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0. . ~ 2022. 1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에”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시의원”을 “사천시의회 의원”으로, “자”를 “사람”으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금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2. 긴급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u>시장</u>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사천시장</u> (이하 “시장”이라 한다) ----- -----.</p>
<p>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시장은 <u>시에</u>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 <u>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p> <p>③ 위원은 공무원, <u>시의원</u>,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u>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u></p> <p>④ (생 략)</p>	<p>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사천시의회 의원</u>- ----- <u>사람</u> ----- ----- <u>위촉하되, 위촉위원은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고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특정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회의) ① ~ ③ (생 략)</p>	<p>제11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p>

<신 설>

④ (생 략)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자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관 련 법 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공고 제2022-1419호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사천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여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10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노인장애인과장)에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노인장애인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53, FAX: 831-6023)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노인장애인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사천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여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10조)

- 2022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0. . ~ 2022. 1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노인복지기금”을 “시장은 노인복지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
위원회”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사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기금운용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사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심의·결정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 ⑥ (생략)</p>	<p>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노인복지기금 ----- -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다.</p>
<p>제11조(관계 규정의 적용) 기금의 집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p>	<p><삭 제></p>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공고 제2022-1421호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의 2건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가.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나.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다.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규정된 소송사무 처리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서 규정함에 따라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함.

나.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을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서 규정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코자 함.

다.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사무 처리 내용, 소송비용 회수 관련 규정 및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현행 규칙을 전부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조례 제명 변경
- 2) 용어 정비(법률고문→고문)
- 3) 소송사무 처리 규정 삭제

나.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폐지

다.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1)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

- 소송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2) 소송사건의 수행

- 소송문서의 접수 처리 및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

3) 판결 확정 이후의 결과 조치 등

- 승소 및 패소 판결 시 조치, 소송 비용 회수 및 구상권 행사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혁신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혁신법무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230,

FAX : 831- 6015)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혁신법무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고문 변호사 관련 규정 외의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 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나.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및 제5조)

- 법률고문 → 고문, 공보감사담당관 → 송무업무담당부서장

다. 내용 삭제(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

- 소송과 관련된 내용 삭제하고, 이를 사천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서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규정하고 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0. . ~ 2022. 1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를 “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시의” 를 “사천시의” 로, “법률고문 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을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 을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법률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 라 한다)” 를 “고문변호사”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자 중에서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 를 “사람 중에서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에서 규정한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제4조” 를 “제5조”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조 제1항을” 을 “제3조를” 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에” 를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에” 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 라 한다)” 를 “위원회” 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공보감사담당관과” 를 “송무업무담당부서장과” 로, “공보감사담당관에게” 를 “송무업무담당부서장에게” 로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제10조제1항 중 “고문 변호사는” 을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시의</u>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두는 사천시 <u>법률고문 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u>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촉 및 해촉) ① <u>시장은</u>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사천시 <u>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u>를 위촉할 수 있다.</p> <p>②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추천하는 <u>자 중에서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p> <p>③ · ④ (생략)</p> <p>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p>	<p style="text-align: center;"><u>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 <u>사천시의</u> ----- ----- ----- <u>고문변호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u>-----.</p> <p>제2조(위촉 및 해촉) ① <u>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u>고문변호사</u>----- -----.</p> <p>② ----- -----.</p> <p>----- <u>사람 중에서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서 규정한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p>

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4조에 따른 자문 및 상담을 거부한 경우
5.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가. ~ 라. (생략)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 (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 종료 시까지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 및 상담)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보감사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자문 결과는 공보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대리인)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은 고문변

-----.

1. ~ 3. (현행과 같음)
4. 제5조-----

5. 제3조를 -----
6. -----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
----- 위원회-----

-----.

-----.

제5조(자문 및 상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송무업무담당부서장과 -----
----- 송무 업무담당부서장에게 -----.

<삭제>

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변호사에 대한 보수 및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범위에서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고문변호사와 외부 변호사의 선임 대상 및 방법 등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사건에서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및 제5조에 따른 소송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초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소송비용) ① 고문변호사 등이 수입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하되, 소송가액은 고문변호사 등이 시에 청구서 등을 제

<삭 제>

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추후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병합된 사건은 본 건과 단일사건으로 보아 합산한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 등이 수입한 소송사건(본안 사건으로 한정한다)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과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시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고문변호사 등의 구체적인 노력정도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중요소송 및 경미한 소송의 요건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1.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중요 소송 사

건으로 결정한 경우

2. 소송내용이 단순하거나 소송가액이 낮아 시의 행정 또는 재정
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제8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① 시장

은 시 또는 시 소속공무원(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
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고소
· 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하거나 민
사소송 등의 제소를 당한 경우에는
총 일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송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변호비용은 해당 공무원이 부서
장의 확인을 받아 공보감사담당관
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
장은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
의 위법행위로 판결되면 해당공무
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소송비용 지원 및 소송비
용의 일부 또는 전부 반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2

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제2항에 따
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삭 제>

<삭 제>

소속으로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패소의 위험 및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노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 소송 사건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중요 소송 사건의 지정 및 소송 비용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무관련 형사피소사건 등의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요 소송사건에 대한 수입변호사 선정에 관한 사항(일반 변호사 선임)
5. 「사천시 소송사무처리규칙」 제21조에 따른 구상권 행사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조제2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 심의에 관한 사항
7. 제7조제4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8. 「사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사천시 소송심의회는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
다.

제10조(자문수당) ① 고문 변호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
을 지급한다.

② (생략)

제12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제10조(자문수당) ① 시장은 고문변
호사에게 -----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혁신법무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폐지이유

현행 시행규칙이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위 내용을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서 규정토록 하고, 현행 시행규칙은 폐지코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0. . ~ 2022. 1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혁신법무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소송사무 관련 내용을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서 규정하고,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2021. 10. 25. 의결)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법무부의 소송비용 회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경이 불가피한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여 공정한 소송 직무의 수행 및 예산누수의 방지를 도모하며,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3.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목적, 용어의 정의, 소송주관부서와 담당부서 등을 규정

나.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안 제6조 및 제7조)

- 소송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

다. 소송사건의 수행(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 소송문서의 접수 처리
-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
- 소송수행자 등의 책무

라. 소송 결과에 따른 조치(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판결문 접수 및 판결 결과 후 대책 조치
- 상소 및 포기 여부

마. 판결 확정 이후의 조치(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 승소판결 및 패소판결 시 조치
- 소송비용 회수 및 구상권 행사

바. 직무관련사건(안 제24조 및 제25조)

- 공무원 직무관련사건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

사. 행정심판사건 등(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 행정심판사건 처리 및 소송대리인 선임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10. . ~ 2022. 1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또는 사천시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의 수행, 소송사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5. “사건담당부서”란 당해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말한다.

6. “직무관련사건”이란 사천시(이하 “시”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등) ① 소송은 송무업무담당부서장이 주관하고, 사건담당부서장이 담당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건담당부서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
2. 담당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주관과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송무업무담당부서장에게 이송하고, 송무업무담당부서장은 이를 즉시 사건담당부서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②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송무업무담당부서장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사건담당부서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송무업무담당부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하는 경우에는 1회 변론기일 5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우에는 상소제기 불변기간 2일 전까지 이를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사람은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제2장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

제6조(소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요 소송 사건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고문변호사 위·해촉 심의에 관한 사항
3. 구상권 행사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직무관련사건의 변호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5. 「사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른 특별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국·소장 및 담당관, 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송무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송무업무담당부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게 심의해야 할 사항이 있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3장 소송사건의 수행

제8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송무업무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소송수행방침결정) 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사건담당부서장은 미리 송무업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선임 및 지명 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고포기 등의 사유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소송수행자 및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는 소송마다 사건담당부서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되, 소송담당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명할 수 있다.

제10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사건담당부서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선임 및 지명을 송무업무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송무업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선임 및 지명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외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한다.

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2. 소송담당자: 지명장(별지 제3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별지 제5호서식)

제11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제1호의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시정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고도의 법률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할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선례 등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는 사건
5. 그 밖에 시장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시장은 사천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외부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사건 관할 법원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
3.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하는 소송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③ 제2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사건에서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소송비용) ①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사천시 고문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하되, 소송가액은 고문변호사 등이 시에 청구서 등을 제출한 시점을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기준으로 하고, 추후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병합된 사건은 본 건과 단일사건으로 보아 합산한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과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사천시 고문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고문변호사 등의 구체적인 노력 정도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문의 작성, 시행 및 보고
3. 변론기일예의 출석, 입회 및 보고
4. 선고기일예의 출석, 입회 및 보고
5.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및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은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인 공무원이 수행한다.

제14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해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서의 출석 및 진술
4.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5. 변론종결시점에 소송진행상황 종합보고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중요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 사항
2. 변론·선고기일의 지정 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이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

제15조(소송고지) 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시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수행자등을 선임하지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사건담당부서장은 항상 소송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시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송수행자등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제4장 소송 결과에 따른 조치

제17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판결문을 접수한 사건담당부서장은 송무업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패소한 사건은 상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③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 정지 신청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판결금을 가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18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실익의 정도를 비교, 검토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제19조(상소포기) 송무업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시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시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장 판결 확정 이후의 조치

제20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사건담당부서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소송비용 회수 등) ① 송무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사건에서 승소한 후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의 경우는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송달되면 송무업무담당부서장은 7일 이내에 사건담당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담당부서장은 소송비용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소송비용은 세외수입으로 징수 및 관리
2. 결정문 수령 후 채무자에게 10일 이내 납부 통지
3. 채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집행 절차 이행
4. 소송비용에 대한 결손처리를 할 경우 지방세등의 결손처리 절차 준용
5. 소송비용 회수 완료 또는 회수 진행 사항을 수시로 송무업무담당부서 장에게 통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무업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액의 확정 결정 신청 및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부지로 시장 또는 시를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소송비용회수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3. 공무원이 소송대리 또는 수행한 사건
4. 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희생 및 파산 면책 등의 사유로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소송비용확정신청 전까지 해당 결정 등을 받아야 함)
5. 채무자가 사망, 실종, 행방불명된 경우
6. 일부 승소 등 사유로 시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더 높거나 비슷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④ 국가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수행부터 소송비용 회수까지 그 방법·절차 및 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른다.

제22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사건담당부서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 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 개선 또는 법령 개정의 건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구상권행사)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송무업무담당부서장은 패소 판결의 원인이 시 소속 직원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업무담당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송무업무담당부서장은 감사업무담당부서의 감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상권 행사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한다. 다만, 변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6장 직무관련사건

제24조(변호비용 지원)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정에서 직무관련사건이 발생한 경우 총 일천만원 이내에서 변호비용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변호비용은 해당 공무원이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송무업무담당부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제25조(변호비용 회수) ① 송무업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1.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패소 확정된 경우
2. 해당 공무원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판결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소송비용액의 합이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02호

제7장 행정심판사건 등

제26조(행정심판청구서 처리) ① 행정심판청구서를 송부받은 사건업무담당부서장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한 답변서를 법무업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법무업무담당 팀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7조(대리인 선임) 시장은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②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에 대한 수입료는 「사천시 고문변호사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 중 행정소송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착수금만 지급한다.

제28조(위임) 이 규칙 이외에 소송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 약 서

본인은 아래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사천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규정된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직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건명 :

원 고 :

피 고 :

년 월 일

서약자 : (인)

(인)

(인)

사천시장 귀하

소송수행자 지정서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천시 직원 ○○○, ○○○, ○○○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원 고 :
2. 사건명 :
3. 법원 및 사건번호 :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법원 귀중

지 명 장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사천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라 귀직을 금일부터 다음 소송 사건의 담당자로 지명하니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함.

년 월 일
사 천 시 장 ○ ○ ○ (직인)

1. 사건명 :

2. 원 고 :

3. 피 고 :

4. 소송담당자의 직무

가.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나. 소송수행 방침문의 작성, 시행 및 보고

다. 변론기일예의 출석, 입회 및 보고

라. 선고기일예의 출석, 입회 및 보고

마.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및 관리

바.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별지 제4호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 (담당재판부 : 제 단독)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1.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름 재 허 부
주소 판
연락처 장

[팩스번호 : () - 이메일 :]

나. 신청이유 : 당사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왔음.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부

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바. 복대리인의 선임

사.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년 월 일

신청인 및 위임인 이름 : 원(피)고 사천시 대표자 사천시장 ○ ○ ○ (직인)

법원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소 송 위 임 장		
사 건		
당사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 권한을 수여한다.		
수임인		수임인 확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3. 소의 취하 4.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5.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6. 복대리인의 선임 7.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8.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9.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p>년 월 일</p> <p>위임인 사 천 시 장 ○ ○ ○ (직인)</p> <p>법원 귀중</p>		